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4분기

Vol. 21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신규 위촉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 안건 분석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포럼 안내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19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국가회계교육 포털 개편

| 재정통계 동향

-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2019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재무정보 제공

| 특집(안)

- 프랑스 공적연금 회계제도
-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센터동향

- 「2019년 재정통계실무협의회」 개최
-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2019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세미나

-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

| 공지사항

-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4분기

Vol.21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
②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신규 위촉	5
③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 안건 분석	7
④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포럼 안내	31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33
①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33
②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34
③ 「2019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35
④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36
⑤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36
⑥ 국가회계교육 포털 개편	37
03. 재정통계 동향	39
①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39
② 2019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48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51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재무정보 제공	51
05. 특집(안)	55
① 프랑스 공적연금 회계제도	55
②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현황	66
06. 센터동향	73
① 「2019년 재정통계실무협의회」 개최	73
②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74
③ 2019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75
07. 세미나	77
①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77
②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82
③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	85
08. 공지사항	86
①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86
② 뉴스레터 이용 안내	86
③ 홈페이지 이용 안내	86

01

국가회계 동향

1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12월 20일 개최되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및 논의 결과〉

구분	안건	논의 결과
의결안건 제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 일괄 정비 (1년 이상 → 1년 초과)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연금충당부채 문단34.(4)~(5), 문단40의2) ·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내용 반영 (출연금, 부담금수익, 위탁개발사업계획의 정의 수정) 	원안대로 의결
보고안건 제1호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개요 및 추진경과 ·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내용 · 2018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원안대로 접수
보고안건 제2호 실무해설 개정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표시방법 개선 (2019회계연도 국가통합 순자산변동표부터 보고금액과 회계변경누적 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시) ·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 관련 계정과목 신설 (임차자산개량자산(기타의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 · 국가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실무해설 등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 일괄 정비,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관련) 	원안대로 접수

이번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김봉환(서울대), 김완희(가천대), 송동섭(단국대), 유승원(경철대), 윤재원(홍익대), 이아영(강원대), 임근구(삼정회계법인), 지현미(계명대) 총 8명(가나다 순)이며, 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 및 접수되었다.

* 총 10명의 민간위원 중 정다미(명지대), 정도진(중앙대) 총 2명 불참

가.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 일괄 정비

원칙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단기는 '1년 이하', 장기는 '1년 초과'이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일부 규정에서 장기를 '1년 이상' 등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결산담당자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관련 문구를 일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타 기준과의 불필요한 차이를 해소하고 결산 수행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결산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나.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2016회계연도부터 퇴직수당충당부채도 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계정과목 정비, 주석 양식 등) 마련은 관계 부처(인사혁신처, 국방부)의 요청으로 2019회계연도까지 연기되었다. 2020회계연도부터 관계 부처에서 요청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퇴직수당충당부채에 대하여 연금충당부채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주석 양식도 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한 양식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수당충당부채에 대한 충분한 주석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인사혁신처, 국방부) 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다.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내용 반영

관련 타 법령의 개정사항 중 국가회계예규상 일부 정의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하여 '출연금', '부담금수익', '위탁개발사업계획'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라.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표시방법 개선

현재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는 보고금액과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반면, 국가통합 순자산변동표는 보고금액으로 일괄 표시하여 작성방법이 서로 상이한 상태이다. 기초순자산에 보고금액과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회계 관행(민간기업 회계처리)에 부합하므로 2019회계연도부터 국가통합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을 보고금액과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일관되게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해당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사항은 아니며, 결산담당자들의 이해를 위해 '2019 재무결산 Q&A'에 수록하였다.

마.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 관련 계정과목 신설

실무적으로 임차자산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국가회계실체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다수 발생하므로 결산 편의를 위하여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실무해설을 통해 제공하고, '임차개량자산(기타의일반유형자산)' 등 관련 계정과목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결산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회(12.20),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

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신규 위촉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 27일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 동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제6기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에 근거해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제2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간 회계제도의 연계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중 민간위원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1명)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1명)
-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에 상당하는 직을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8명 이내)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검토 끝에 2019년도 10월, 부교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규정은 ①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혹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② 부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기존	변경 (2019.10.29.)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u>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u>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제6기 민간위원은 재정 및 회계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제2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회계제도 운영 및 국가회계의 처리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6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현황〉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완희(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동섭(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승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아영(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다미(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도진(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현미(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임근구(삼정회계법인 전문, 회계사)

3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의 안건 분석

아래는 이번 2019년 12월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안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PSASB 웹페이지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abu-dhabi-united-arab-emirat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안건	주요 내용
수익	안건 5: 수익 / 이전비용 (Revenue / Transfer Expenses)	중간검토(In-Period Review) 반영 결과 검토 및 공개초안 승인
	안건 6: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안건 8: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비교환비용	안건 7: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ED 72))	
리스	안건 9: 리스(Lease)	프로젝트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대안 평가 체계 논의
측정	안건 11: 공공부문 측정 (Public Sector Measurement)	자문보고서 및 예시 공개초안의 예비 응답 분석 결과 발표
사회기반 시설	안건 12: 사회기반시설 자산 (Infrastructure assets)	이슈분석 흐름도 보완 및 이슈 검토
유산	안건 13: 유산(Heritage)	2020년 3월 회의로 논의 연기

□ 수익(Revenue): 안건 5호, 6호, 8호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행의무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부문의 수익거래의 회계처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현행의 수익 회계처리기준은 수익거래가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인지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익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무제표 작성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구분기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개념을 확장하여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는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을 참고하여 개발한 5단계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고, 이외의 수익거래는 기존의 개념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분		수익 회계처리 원칙	적용 대상 IPSAS(안)
수익 거래	수행의무 있음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PSPOA)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수행의무 없음	일반적 수익 회계처리 원칙 (개념체계를 참고하여 개발 중)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이번 2019년 12월 정례회의에서는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공개초안인 ED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와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공개 초안인 ED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를 승인하였다.

다음은 수익 프로젝트 관련 주요 제안사항과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안건 5: 수익 / 이전비용 (Revenue / Transfer Expenses)</p>	
5.2.1.	<p>[중간검토 의견의 반영을 위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12월 회의에서 ED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D 70, 71, 72에 대한 중간검토 (In-Period Review)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에 대한 IPSASB 위원의 의견을 11월 중에 수렴하였음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5.2.2.	<p>[중간검토 이슈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검토 기간에 제출된 총 12건의 IPSASB 위원 의견서에서 약 300개의 의견을 추출하여 주제 (theme)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주제	적용 대상 ED	12월 안건
	(1) 이전수익 / 이전비용 (Transfer Revenue / Transfer Expens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3
	(2) 공시(Disclosur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4
	(3)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	공통 (ED 70, 71, 72)	안건 5.2.5
	(4) 적용사례 / 오탈자(결론도출 근거 포함) (Examples / Editorials(Including BC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6
	(5) 구조 이슈(Structure)	ED 71, ED 72	안건 7.2.4 안건 8.2.3
	(6) 측정(Measurement)	ED 71	안건 8.2.4
	(7) 자본 이전(Capital Transfers)	ED 71	안건 8.2.5
	(8) 적용 범위(Scope)	ED 72	안건 7.2.3
	(9)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평가(PSPOA Assessment)	ED 72	안건 7.2.5
	(10) 기타 이슈	ED 71	안건 8.2.6
	(Staff 제안사항) ○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		
	(IPSASB 의결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2.3.	<p>[수행의무가 있는 이전수익, 이전수익]</p> <p>① Transfer Expenses(이전비용)의 정의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2의 “Transfer Expenses(이전비용)” 용어 정의가 ED 71의 “Transfer Revenue(이전수익)” 용어 정의와 대칭될 수 있도록 Transfer Expenses(이전비용)에는 조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함 <p>②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수익의 정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1은 Transfer Revenue(이전수익)를 재화나 서비스를 반대 급부로 제공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ED 70의 Transfer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수행의무가 있는 이전수익)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 어려움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수익”의 정의를 별도로 개발하고, 적용지침(AG)에 관련 설명을 추가해야 함 ③ 기타 용어 관련 이슈 • ED 71의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수익 거래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수취하는 제3자에게 관련 현재의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에는 아직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므로 ‘Transfer Revenue’ 대신 ‘Transfer Receipt’를 사용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fer Revenue’와 ‘Transfer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를 정의하고, ‘Transfer Expenses’의 정의를 수정할 것 ○ ‘Transfer Receipt’ 및 ‘Transfer Expenditures’에 관한 용어를 변경할 것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fer Revenue’와 ‘Transfer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에 대해 별도로 정의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함 ○ ‘Transfer Receipt’ 및 ‘Transfer Expenditures’에 관한 용어를 변경함 </div>
<p>5.2.4.</p>	<p>[공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0, ED 71, ED 72의 공시사항 사이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중간검토 버전의 ED 70, 71, 72의 공시사항을 유지하는 옵션3이 가장 타당함 (ED 70의 IFRS와의 일관성, ED 71의 적용 용이성, ED 72에 대한 IPSASB 기승인 사실 고려) • 공시사항 관련 ED 70, 71, 72에 다음과 같은 SMC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70의 공시사항이 IFRS 15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b) ED 71의 공시사항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는가? (c) ED 72의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과 관련된 공시사항의 경우 ED 70과 대칭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0, ED 71, ED 72의 공시사항에 대해 <옵션3>을 적용할 것 (중간검토 버전의 ED 70, 71, 72의 공시사항 유지) ○ 공시사항 관련 SMC를 추가할 것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3>을 적용하며 공시사항 관련 SMC를 추가할 것을 결정함 </div>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5.2.5.</p>	<p>[구속력 있는 약정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토 과정에서 현재 ED 70의 “Binding Arrangement” 정의가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table border="1" data-bbox="331 572 1241 711"> <thead> <tr> <th data-bbox="331 572 783 612">ED 70</th> <th data-bbox="783 572 1241 612">수정 제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612 783 711">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parties to the arrangement.</td> <td data-bbox="783 612 1241 711">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both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both parties to the arrangement.</td> </tr> </tbody> </table>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 있는 약정의 정의는 수정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부여됨을 알 수 있음 (b) ‘parties to the arrangement’로 표현되어 있어 양자 모두에게 부여됨을 알 수 있음 (c) 공공부문이더라도 양자 간에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가 동일할 필요가 없음 (d) AG 14에 이미 구속력 있는 약정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음 (e) 해당 정의는 2018년에 IPSASB가 이미 승인한 것임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약정의 당사자 모두에게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약정의 정의를 수정함 	ED 70	수정 제안	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parties to the arrangement.	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both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both parties to the arrangement.
ED 70	수정 제안				
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parties to the arrangement.	A binding arrangement is an arrangement that confers both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n both parties to the arrangement.				
<p>5.2.6.</p>	<p>[적용사례, 편집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토 의견 중 ED 70, ED 71, ED 72의 적용사례 등 문단 이외 지침(non-authoritative text)에 대한 의견과 이탈자 등 편집 관련 의견도 있음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토 과정상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결론도출 근거를 제외한 문단 이외 지침에 대한 의견, 편집 관련 의견은 ED 승인 이후 이행할 편집 검토 절차(Editorial Review Process)에서 반영할 것 ○ 결론도출 근거에 대한 의견은 IPSASB의 주요 심의 결과를 담고 있으므로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의 제안과 같이 문단 이외 지침, 편집 관련 의견은 편집 검토 절차에서 반영하기로 결정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안건 6: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p>																
6.2.1.	<p>[ED 70 관련 중간검토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검토에서 제기된 이슈 중 ED 70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대상 ED</th> <th style="text-align: center;">12월 안건</th> </tr> </thead> <tbody> <tr> <td>(1) 이전수익 / 이전비용 (Transfer Revenue / Transfer Expenses)</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 (ED 70, 71, 72)</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건 5.2.3</td> </tr> <tr> <td>(2) 공시(Disclosures)</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 (ED 70, 71, 72)</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건 5.2.4</td> </tr> <tr> <td>(3)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 (ED 70, 71, 72)</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건 5.2.5</td> </tr> <tr> <td>(4) 적용사례 / 오탈자(결론도출 근거 포함) (Examples / Editorials (Including BCs))</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 (ED 70, 71, 72)</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건 5.2.6</td> </tr> </tbody> </table>	주제	적용 대상 ED	12월 안건	(1) 이전수익 / 이전비용 (Transfer Revenue / Transfer Expens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3	(2) 공시(Disclosur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4	(3)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	공통 (ED 70, 71, 72)	안건 5.2.5	(4) 적용사례 / 오탈자(결론도출 근거 포함) (Examples / Editorials (Including BC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6
	주제	적용 대상 ED	12월 안건													
	(1) 이전수익 / 이전비용 (Transfer Revenue / Transfer Expens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3													
	(2) 공시(Disclosure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4													
	(3)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	공통 (ED 70, 71, 72)	안건 5.2.5													
	(4) 적용사례 / 오탈자(결론도출 근거 포함) (Examples / Editorials (Including BCs))	공통 (ED 70, 71, 72)	안건 5.2.6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6.2.2.	<p>[ED 70 주요 수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검토 결과를 반영한 ED 70의 주요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정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정 대상 문단</th> </tr> </thead> <tbody> <tr> <td>(a) 일부 강제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관련 내용 보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단 120, AG32, BC32~B38, BC46 수정</td> </tr> <tr> <td>(b) 혼합거래(hybrid transaction)의 구성요소 구분 기준의 명확화 :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ED 70)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ED 71)의 구성요소가 혼합된 거래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단 AG70, AG71, BC55 추가</td> </tr> <tr> <td>(c) 개별가격(stand-alone price) 산정을 위한 지침 제공 : 시장 정보로부터 개별가격을 추정할 수 없어 관측 가능한 유효출가격이 없는 경우 기대 원가(expected cost)를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단 AG92 수정</td> </tr> <tr> <td>(d) 채권의 후속측정 지침 개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단 AG142, AG143 수정</td> </tr> </tbody> </table>	수정사항	수정 대상 문단	(a) 일부 강제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관련 내용 보완	문단 120, AG32, BC32~B38, BC46 수정	(b) 혼합거래(hybrid transaction)의 구성요소 구분 기준의 명확화 :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ED 70)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ED 71)의 구성요소가 혼합된 거래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	문단 AG70, AG71, BC55 추가	(c) 개별가격(stand-alone price) 산정을 위한 지침 제공 : 시장 정보로부터 개별가격을 추정할 수 없어 관측 가능한 유효출가격이 없는 경우 기대 원가(expected cost)를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함	문단 AG92 수정	(d) 채권의 후속측정 지침 개선	문단 AG142, AG143 수정					
	수정사항	수정 대상 문단														
	(a) 일부 강제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관련 내용 보완	문단 120, AG32, BC32~B38, BC46 수정														
	(b) 혼합거래(hybrid transaction)의 구성요소 구분 기준의 명확화 :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ED 70)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ED 71)의 구성요소가 혼합된 거래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	문단 AG70, AG71, BC55 추가														
	(c) 개별가격(stand-alone price) 산정을 위한 지침 제공 : 시장 정보로부터 개별가격을 추정할 수 없어 관측 가능한 유효출가격이 없는 경우 기대 원가(expected cost)를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함	문단 AG92 수정														
	(d) 채권의 후속측정 지침 개선	문단 AG142, AG143 수정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기와 같이 ED 70을 수정할 것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IPSASB 의결 결과) ○ Staff의 제안과 같이 ED 70을 수정할 것을 결정함										
6.2.3.	<p>[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강제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의 회계처리 및 공시사항]</p> <p>① 적용지침(AG 32)의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특성상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강제로 거래를 체결하게 되어 암묵적인 가격할인(implicit price concession)이 발생한 경우 문단 8(e)에 따른 회수 가능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원래 대가가 아닌 낮아진(할인된) 거래대가임을 명시하도록 AG 32를 수정할 것 * 문단8은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름 • 참고로, 문단8(e)와 상기와 같이 수정된 AG 32를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황</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a)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은 요구되지 않음 </td> </tr> <tr> <td>(b)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가격에 암묵적 가격할인이 포함된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할인된 가격으로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됨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이 요구됨 </td> </tr> <tr> <td>(c)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거래대가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 일부 회수된 대가는 관련 문단에 따라 회계처리 </td> </tr> <tr> <td>(d)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회수되지 않은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td> </tr> </tbody> </table> <p>② 관련 공시사항(문단 120)의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20에 다음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강제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의 암묵적 가격할인 이후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 공시 (b) 암묵적 가격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 공시 <div style="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black; margin-top: 10px;"> (Staff 제안사항) ○ 문단8(e)와 개선된 AG 32를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4가지 상황을 ED 70이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문단120 및 AG 32를 상기와 같이 수정할 것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black; margin-top: 10px;"> (IPSASB 의결 결과) ○ Staff의 제안과 같이 ED 70을 수정할 것을 결정함 </div>	상황	적용 결과	(a)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은 요구되지 않음 	(b)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가격에 암묵적 가격할인이 포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할인된 가격으로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됨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이 요구됨 	(c)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거래대가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 일부 회수된 대가는 관련 문단에 따라 회계처리 	(d)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회수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상황	적용 결과										
(a)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은 요구되지 않음 										
(b)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가격에 암묵적 가격할인이 포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는 할인된 가격으로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됨 • 해당 거래에 관한 추가 공시사항이 요구됨 										
(c)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거래대가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 일부 회수된 대가는 관련 문단에 따라 회계처리 										
(d)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회수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3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문단 8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추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안건 8: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p>											
8.2.4.	<p>[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은 비교환수익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측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ED 71은 ED 70과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이를 개정하여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을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함 • 이와 관련 중간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및 관련된 Staff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중간검토 이슈</th> <th>Staff 분석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a) 적용의 복잡성 : 세금에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종전 IPSAS 23에 따라 세금을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로 측정하는 것보다 복잡함</td> <td>• IPSAS 23이 조세를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는 것과, ED 71이 거래가격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most likely amount)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음</td> </tr> <tr> <td>(b) 손상 : IPSAS 29의 손상모형이 IPSAS 41, '금융상품'의 기대손상모형에 비해 적용하기 용이함</td> <td>• IPSAS 41의 기대손상모형을 사용할 경우 손상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인식되며, 손상모형이 하나로 통일됨</td> </tr> <tr> <td>(c)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수익 인식 :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td> <td>• ED 70에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의 수익 인식 기준이 존재함</td> </tr> <tr> <td>(d) 현금거래/비현금거래 구분 : 현금거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비현금거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td> <td>• IPSAS 23의 규정과 가능한 일치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임. ED 70에서는 비현금자산의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규정함</td> </tr> </tbody> </table>	중간검토 이슈	Staff 분석 결과	(a) 적용의 복잡성 : 세금에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종전 IPSAS 23에 따라 세금을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로 측정하는 것보다 복잡함	• IPSAS 23이 조세를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는 것과, ED 71이 거래가격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most likely amount)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음	(b) 손상 : IPSAS 29의 손상모형이 IPSAS 41, '금융상품'의 기대손상모형에 비해 적용하기 용이함	• IPSAS 41의 기대손상모형을 사용할 경우 손상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인식되며, 손상모형이 하나로 통일됨	(c)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수익 인식 :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 ED 70에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의 수익 인식 기준이 존재함	(d) 현금거래/비현금거래 구분 : 현금거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비현금거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	• IPSAS 23의 규정과 가능한 일치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임. ED 70에서는 비현금자산의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규정함
	중간검토 이슈	Staff 분석 결과									
	(a) 적용의 복잡성 : 세금에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종전 IPSAS 23에 따라 세금을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로 측정하는 것보다 복잡함	• IPSAS 23이 조세를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는 것과, ED 71이 거래가격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most likely amount)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음									
	(b) 손상 : IPSAS 29의 손상모형이 IPSAS 41, '금융상품'의 기대손상모형에 비해 적용하기 용이함	• IPSAS 41의 기대손상모형을 사용할 경우 손상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인식되며, 손상모형이 하나로 통일됨									
(c)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수익 인식 : 거래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 ED 70에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의 수익 인식 기준이 존재함										
(d) 현금거래/비현금거래 구분 : 현금거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비현금거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	• IPSAS 23의 규정과 가능한 일치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임. ED 70에서는 비현금자산의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규정함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4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ED 71을 수정할 것 (a) 적용의 복잡성 → 조세수익의 측정 관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과 최선의 추정치가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 추가(문단90) (b) 손상 → IPSAS 41, '금융상품'의 기대손상모형을 준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SMC를 ED 71에 추가 (c)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수익 인식 → ED 70의 관련 규정을 ED 71에도 추가(문단40 내지 문단43) (d) 현금거래/비현금거래 구분 → ED 71에도 동일 규정 마련(문단69 및 문단70)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의 제안과 같이 ED 71을 수정할 것을 결정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8.2.5.	<p>[자본이전(Capital Transf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전에 대한 중간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단 사이의 일관성 이슈가 제기됨 <table border="1" data-bbox="331 502 1241 926">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331 502 1081 542">중간검토 이슈</th> <th data-bbox="1081 502 1241 542">Staff 제안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542 583 648">(a) 문단 92의 일관성</td> <td data-bbox="583 542 1081 648">자본이전은 구속력 있는 약정에서 발생한다고 정의 되는데, 문단 92는 구속력 있는 약정 없이 발생하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td> <td data-bbox="1081 542 1241 648">문단 92 삭제</td> </tr> <tr> <td data-bbox="331 648 583 787">(b) 문단 95의 일관성</td> <td data-bbox="583 648 1081 787">자본이전은 하나 이상의 약정활동(enforceable activity), 즉 비유동·비금융 자산 취득 또는 건설이 수반하여야 하는데, 문단 95는 제약활동이 없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td> <td data-bbox="1081 648 1241 787">문단 95 삭제</td> </tr> <tr> <td data-bbox="331 787 583 926">(c) 문단 96의 일관성</td> <td data-bbox="583 787 1081 926">문단 96에 따르면 전체 유입금액을 비금융자산의 취득·건설에 배분해야 하나, 수익이 하나 이상의 수행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전체 유입액을 취득·건설에 배분하지 말아야 함</td> <td data-bbox="1081 787 1241 926">문단 96, AG47~48 삭제</td> </tr> </tbody> </table>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상기와 같이 ED 71을 수정할 것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의 제안과 같이 ED 71을 수정할 것을 결정함 	중간검토 이슈		Staff 제안사항	(a) 문단 92의 일관성	자본이전은 구속력 있는 약정에서 발생한다고 정의 되는데, 문단 92는 구속력 있는 약정 없이 발생하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문단 92 삭제	(b) 문단 95의 일관성	자본이전은 하나 이상의 약정활동(enforceable activity), 즉 비유동·비금융 자산 취득 또는 건설이 수반하여야 하는데, 문단 95는 제약활동이 없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문단 95 삭제	(c) 문단 96의 일관성	문단 96에 따르면 전체 유입금액을 비금융자산의 취득·건설에 배분해야 하나, 수익이 하나 이상의 수행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전체 유입액을 취득·건설에 배분하지 말아야 함	문단 96, AG47~48 삭제
중간검토 이슈		Staff 제안사항											
(a) 문단 92의 일관성	자본이전은 구속력 있는 약정에서 발생한다고 정의 되는데, 문단 92는 구속력 있는 약정 없이 발생하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문단 92 삭제											
(b) 문단 95의 일관성	자본이전은 하나 이상의 약정활동(enforceable activity), 즉 비유동·비금융 자산 취득 또는 건설이 수반하여야 하는데, 문단 95는 제약활동이 없는 자본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문단 95 삭제											
(c) 문단 96의 일관성	문단 96에 따르면 전체 유입금액을 비금융자산의 취득·건설에 배분해야 하나, 수익이 하나 이상의 수행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전체 유입액을 취득·건설에 배분하지 말아야 함	문단 96, AG47~48 삭제											
8.2.7.	<p>[손실부담계약(Onerous Revenue Binding Arrang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9월 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은 원가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ED 70과 ED 71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슈 제기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부담계약은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 대상 거래로, ED 70과 ED 71은 모두 IPSAS 19 적용 대상 거래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함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의 제안과 같이 손실부담계약 관련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함 												
8.2.8.	<p>[구속력 있는 약정의 위반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Staff에게 자원수령자가 구속력 있는 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가를 반납해야 할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검토할 것을 지시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는 약정의 위반은 오류(error)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약정 위반 시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는 약정의 위반은 IPSAS 3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ED 71에서 약정 위반 회계처리를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함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론도출 근거와 적용지침을 추가하여 구속력 있는 약정의 위반 회계처리는 IPSAS 3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안건 7호

수익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는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환비용에 적용할 새로운 비용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SASB는 이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를 통해 비교환비용 중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개별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응급구호(emergency relief)를 다루는 공개초안(ED 67)을 2019년 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잔여 비교환비용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초안(ED 72)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중간검토(in-period review)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중 ED 72, 'Transfer Expenses'의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ED 72를 최종 승인하였다. 다음 표는 비교환비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IPSASB의 주요 논의사항과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 안건 7: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ED 72))	
	[이슈의 주제별 분류]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2와 관련하여 중간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중 ED 72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1) 적용 범위, (2) 구조, (3) PSPOA 평가, (4) 기타 이슈의 4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음
7.2.2.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7.2.3.	<p>[적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적용 범위 관련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ED 72의 변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70과의 연계: ED 70에서 정의된 수행의무 중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것만이 ED 7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b) 소득세 및 급여 관련 부담금: ED 72에서 소득세(income taxes) 및 급여 관련 부담금 (payroll taxes)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불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음 (c) IPSAS 41 적용 대상 금융상품 거래: 할인대여금(concessionary loans)의 경우 ED 72의 적용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되어야 함 (d) 자본보조금 거래: ED 72가 자본보조금(capital grants) 거래를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음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ED 72를 수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70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의 적용 범위에 제3자에게 재화 등의 이전을 요구하는 수행의무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문단8, AG25, AG99) (b) 소득세 및 급여 관련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는 타 IPSAS의 적용 대상인 소득세 및 급여 관련 부담금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할 것(문단99, AG109) (c) IPSAS 41 적용 대상 금융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는 비금융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할인대여금 관련 지침과 금융부채 후속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거할 것(문단3, 문단114, 문단115) (d) 자본보조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의 목적 문단에 자본보조금 거래를 다룬다는 점을 언급할 것(문단1)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의 제안과 같이 소득세 및 급여 관련 부담금에 관련된 지침(문단 99, AG 102-109)을 삭제하였음 ○ ED 72 목적 문단에 자본보조금 거래를 다룬다는 점을 삭제하는 대신 범위 문단에 자본보조금 거래를 다룬다는 점을 명시 ○ 이외의 Staff의 제안과 같이 ED 72를 수정하기로 결정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7.2.4.	<p>[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의 지침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문단 배치: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 관련 문단들은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비용’ 관련 문단에 비해 분량이 적고 실제 적용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므로 기준서의 후단에 배치해야 함 (b) 소제목 반복: ED 72(특히 인식, 측정 섹션)에서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소제목이 반복되고 있음 (c) 채무면제 관련 문단의 이동: 채무면제 관련 지침(문단 92, 93, 113)의 경우 ED 71에서는 적용지침(AG)에 해당하므로 ED 72 역시 이를 적용지침으로 바꾸어야 함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ED 72의 수정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문단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조가 재무제표 작성자가 수행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수행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용이함 (b) 소제목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제목 체제가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회계처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있음 (c) 채무면제 관련 문단의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가 가장 최근의 IPSAS 기준서 구성방식을 따라 각 거래유형별 규정을 문단에 담고 있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배치, 소제목 반복, 채무면제 관련 문단 이동 관련 Staff의 제안사항을 승인할 것을 결정함
7.2.5.	<p>[PSPOA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자가 수행해야 할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원수령자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 즉, 제3자가 자원수령자에게서 수취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통제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자원제공자가 평가하기 어려움 (b) ED 72는 자원제공자가 자원수령자의 진행률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c) ED 72에는 (진행률 산정을 위한) 투입법(input method)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입법을 ED 72에서 제거하거나 관련 지침을 추가해야 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d)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사용되는 ‘통제상실(loss of control)’ 접근법을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위한 PSPOA에서도 사용해야 함</p>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원수령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제공자가 약정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 PSPO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수정은 불필요함 (b) ED 72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가 아니라면 하나의 시점에 이행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자원제공자는 비용을 하나의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단43에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 (c) AG 26의 투입법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고 투입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 (d)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비용의 경우 수령자에게 이전할 자원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는 시점과 수령자가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제3자가 이에 대한 통제를 얻게 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PSPOA에 따른 인식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가 아니라면 자원제공자는 비용을 하나의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는 문단 43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결정함 ○ 이외의 Staff 제안사항을 승인할 것을 결정함
7.2.6.	<p>[기타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토 과정에서 ED 72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기타 이슈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72에서 소유주 출현을 언급하는 문구 삭제: ED 72에는 소유주 배분(distribution to owners)만 다루어야 하며 소유주 출현 관련 언급은 불필요함 (b) ‘대가’, ‘가격’ 용어의 사용: ED 72는 ‘대가’와 ‘가격’을 서로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상 ‘대가’는 거래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가격’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함 (c) 비용과 수익의 회계처리 일치 필요: 자원수령자에게 자원을 이전하면서 현재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원제공자는 자원수령자가 (현재의무를 이행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야 함 (d) 용어: ED 72에서 실체를 지칭할 때 ‘실체(자원제공자)’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며, ED에서 반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기타자산’과 관련된 용어 사용이 일관성을 갖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e) 타 기준서의 개정: IPSAS 24, '재무제표의 예산정보 표시'는 '보조금과 기타 이전'에 관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p>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72에서 소유주 출연을 언급하는 문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에서 이미 논의한 사안이며, 지배실체 또는 투자자 입장의 실체도 ED 72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정은 불필요함 (b) '대가', '가격' 용어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어가 사용된 문구들은 ED 70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이들은 별도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관련 수정은 불필요함 (c) 비용과 수익의 회계처리 일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제공자는 자원을 제공하는 시점에 해당 자원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며, 자원수령자의 현재의무와 관련하여 (통제 가능한 자원이 없어) 인식할 자산이 없음. 또한, 이는 이미 IPSASB가 합의한 사안이므로 이전할 자원의 통제를 잃은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는 ED 72의 수정은 불필요함 (d)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32와 IPSAS 33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grantor, first-time adopter)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체(자원제공자)'에 대한 수정은 불필요함. 반복되는 표현에 대한 검토는 ED 개발의 최종 단계(finalization process)에서 수행해야 함 (e) 타 기준서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어들은 GFS의 용어와 일치하므로 해당 IPSAS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함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 제안사항을 승인할 것을 결정함

□ 리스(Lease): 안건 9호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IFRS 16, '리스(Leases)'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를 위한 리스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현행 IPSAS 13, '리스(Leases)'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IPSAS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공개초안인 ED 64, '리스(Leases)'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모두에 대해 사용권(right-of-use)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각국 기준제정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은 사용권 모형을 적용한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반면,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IFRS 16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IPSASB는 2019년 6월과 9월의 정례회의는 물론, 리스 T/F 회의, 자문위원회(CAG)를 통해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IFRS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번 2019년 12월 회의에서 IPSASB는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다시 살펴보고, 리스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지, IPSAS 13, '리스(Leases)'를 유지 혹은 대체할지 여부도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 안건 9: 리스(Lease)													
9.2.1	<p>[리스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리스 T/F에게 사용권모형 적용방안의 비용-효익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즉, IPSAS 13의 개정 소요)과 논의 대상 이슈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 • 이를 위해 리스 T/F는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 관련된 정례회의 의결 결과,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 보고서'상의 IPSASB의 정책적 목표, 자문위원회(CAG)의 자문 결과를 재검토하였음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되,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것 ○ 리스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된 다음의 3개 대안을 평가·선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옵션1 - IPSAS 13 유지 (b) 옵션2 - IFRS 16과의 정합성 중심 (c) 옵션3 - ED 64 제안 중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1eef6;">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e1eef6;">옵션1 (IPSAS 13 유지)</th> <th style="background-color: #e1eef6;">옵션2 (IFRS 16과의 정합성 중심)</th> <th style="background-color: #e1eef6;">옵션3 (ED 64 제안 중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리스제공자 (Lessor)</td> <td style="background-color: #fce4d6;">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td>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td>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리스이용자 (Lessee)</td> <td style="background-color: #fce4d6;"></td>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td> <td style="background-color: #e1eef6;"></td> </tr> </tbody> </table>	구분	옵션1 (IPSAS 13 유지)	옵션2 (IFRS 16과의 정합성 중심)	옵션3 (ED 64 제안 중심)	리스제공자 (Lessor)	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	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	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	리스이용자 (Lessee)		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	
구분	옵션1 (IPSAS 13 유지)	옵션2 (IFRS 16과의 정합성 중심)	옵션3 (ED 64 제안 중심)										
리스제공자 (Lessor)	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	위험-보상 모형 (Risks and rewards model)	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										
리스이용자 (Lessee)		사용권 모형 (Right-of-use mode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의 제안과 같이 3개 대안으로 나누어 리스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함 																																																																								
9.2.2.	<p>[대안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가 3가지 대안에 대해 평가·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taff가 개발한 체계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4">판단 기준 / 대안</th> <th colspan="2" rowspan="2">현행유지</th> <th colspan="4">변경</th> </tr> <tr> <th colspan="2">부분 변경</th> <th colspan="2">완전 변경</th> </tr> <tr> <th colspan="2">옵션1 (IPSAS 13)</th> <th colspan="2">옵션2 (IFRS 16)</th> <th colspan="2">옵션3 (ED 64)</th> </tr> <tr> <th colspan="2">위험보상</th> <th>사용권</th> <th>위험보상</th> <th colspan="2">사용권</th> </tr> <tr> <td></td> <th>이용자</th> <th>제공자</th> <th>이용자</th> <th>제공자</th> <th>이용자</th> <th>제공자</th> </tr> </thead> <tbody> <tr> <td>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과</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도입비용 및 도입과제</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GFS와의 정합성 영향</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IPSASB 개념체계 준수</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IFRS와의 정합성</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판단 기준(요인)은 과거 IPSASB의 정례회의 의결 결과,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 보고서'상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각 옵션별로 판단 기준의 만족 정도를 3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기입함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표에 따라 각 대안을 분석·평가할 것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판단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Staff에게 지시 2020년 3월 회의에서 대안 평가 체계에 대하여 추가 논의할 것을 결정함 	판단 기준 / 대안	현행유지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1 (IPSAS 13)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위험보상		사용권	위험보상	사용권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과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GFS와의 정합성 영향							IPSASB 개념체계 준수							IFRS와의 정합성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판단 기준 / 대안	현행유지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1 (IPSAS 13)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위험보상		사용권	위험보상	사용권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과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GFS와의 정합성 영향																																																																									
IPSASB 개념체계 준수																																																																									
IFRS와의 정합성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9.2.3.	<p>[할인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지난 2016년 6월에 리스 프로젝트의 논의 대상에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 회계처리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이 상당히 복잡해짐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할인리스 회계처리는 사용권 모형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도입 여부, 수익 프로젝트의 수익인식 원칙 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고려할 때 할인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 것 (리스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리스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에서의 논의 범위를 단순화하므로 리스 프로젝트의 당초 추진 목적 및 이해관계자 의견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b) 신규 리스 기준서의 초안을 덜 복잡하게 함 (c) 계획표상 리스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의 진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것에 동의함 																																																																							
9.2.4.	<p>[옵션1에 대한 평가: IPSAS 13의 유지 또는 대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9.2.2의 대안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옵션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재무관리 (PFM) 효익, IPSASB 개념체계 준수, IFRS와 정합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리스의 부외자산 효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기초자산이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산의 인식/제거와 관련 개념체계의 통계접근법에 부합하지 않음 :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차이가 발생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4" style="background-color: #e0e0e0;">판단 기준 / 대안</th> <th colspan="2"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현행 유지</th> <th colspan="4" style="background-color: #e0e0e0;">변경</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부분 변경</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완전 변경</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옵션1 (IPSAS 13)</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옵션2 (IFRS 16)</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옵션3 (ED 64)</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위험 보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사용권</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위험 보상</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사용권</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제공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제공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제공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도입비용 및 도입과제</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GFS와의 정합성 영향</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IPSASB 개념체계 준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IFRS와의 정합성</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00ff00;">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0000;">하</td> </tr> </tbody> </table>	판단 기준 / 대안	현행 유지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1 (IPSAS 13)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위험 보상		사용권	위험 보상	사용권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	중	중	상	중	상	중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상	상	하	중	하	하	GFS와의 정합성 영향	중	중	하	중	하	하	IPSASB 개념체계 준수	하	하	상	하	상	상	IFRS와의 정합성	하	중	상	상	상	하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상	상	상	상	상	하
판단 기준 / 대안	현행 유지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1 (IPSAS 13)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위험 보상		사용권	위험 보상	사용권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	중	중	상	중	상	중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상	상	하	중	하	하																																																																		
GFS와의 정합성 영향	중	중	하	중	하	하																																																																		
IPSASB 개념체계 준수	하	하	상	하	상	상																																																																		
IFRS와의 정합성	하	중	상	상	상	하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상	상	상	상	상	하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d6;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ccc;">(Staff 제안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3을 유지하는 옵션1을 기각할 것 <div style="background-color: #e2efda;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ccc;">(IPSASB 의결 결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회의에서 각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 후에 재논의할 것에 동의함 																																																			
9.2.5.	<p>[옵션2와 옵션3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9.2.4.의 제안에 따라 IPSAS 13의 개정을 전제로 옵션2와 옵션3에 대해 평가한 결과,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옵션3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3은 옵션2에 비해 IPSASB 개념체계 준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GFS와의 정합성 요인에서는 양 대안이 유사함 ○ 옵션3의 경우 새로운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위한 원칙과 모형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므로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옵션2에 비해 상당히 불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5" style="background-color: #d9e1f2;">판단 기준 / 대안</th> <th colspan="4" style="background-color: #d9e1f2;">변경</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부분 변경</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완전 변경</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옵션2 (IFRS 16)</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옵션3 (ED 64)</th> </t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사용권</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사용권</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위험 보상 제공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제공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도입비용 및 도입과제</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GFS와의 정합성 영향</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IPSASB 개념체계 준수</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IFRS와의 정합성</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c8e6c9;">상</td> <td style="background-color: #ffcdd2;">하</td> </tr> </tbody> </table>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d6;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ccc; margin-top: 10px;">(Staff 제안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옵션2를 채택할 것 <div style="background-color: #e2efda; padding: 5px; border: 1px dashed #ccc; margin-top: 10px;">(IPSASB 의결 결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회의에서 각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 후에 재논의할 것에 동의함 	판단 기준 / 대안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사용권		사용권		이용자	위험 보상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	상	중	상	중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하	중	하	하	GFS와의 정합성 영향	하	중	하	하	IPSASB 개념체계 준수	상	하	상	상	IFRS와의 정합성	상	상	상	하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상	상	상	하
판단 기준 / 대안	변경																																																			
	부분 변경		완전 변경																																																	
	옵션2 (IFRS 16)		옵션3 (ED 64)																																																	
	사용권		사용권																																																	
	이용자	위험 보상 제공자	이용자	제공자																																																
공공재무관리(PFM) 측면 효익	상	중	상	중																																																
도입비용 및 도입과제	하	중	하	하																																																
GFS와의 정합성 영향	하	중	하	하																																																
IPSASB 개념체계 준수	상	하	상	상																																																
IFRS와의 정합성	상	상	상	하																																																
리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상	상	상	하																																																

□ 공공부문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안건 11호

IPSASB는 지난 2014년에 발표된 공공부문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 체계’)와 각 개별 IPSAS의 측정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측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측정’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공부문 자산·부채의 측정기준과 측정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준서인 IPSAS, ‘Measurement(가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IPSASB는 이 IPSAS를 통해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와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기준의 적용 지침을 제공하고, 차입원가·거래원가의 회계처리 원칙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IPSAS의 측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IPSASB는 2019년 4월에 자문보고서, ‘측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자문보고서는 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IFRS 13, ‘공정가치’의 공정가치 개념의 공공부문 도입, 새로운 차입원가 및 거래원가 회계처리 원칙, 자산·부채의 후속 측정기준의 선택을 위해 개발한 흐름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이 자문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임시 응답분석(Preliminary Review of Responses)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임시 응답분석 결과는 자문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되었던 예시 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에 대한 의견과 차입원가 회계처리, 공정가치 도입에 대한 분석만을 담고 있으며, 전체 응답분석 결과는 2020년 3월 정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 안건 11: 측정(Measurement)					
11.2.1. 11.2.2.	<p>[임시 응답분석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가 2019년 4월에 발표한 자문보고서, ‘측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는 총 31개임 Staff의 임시 응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응답분석 결과는 2020년 3월 정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카테고리</th> <th>세부 이슈</th> </tr> </thead> <tbody> <tr> <td>(1) 예시 공개초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아님에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IPSASB가 자문보고서와 함께 예시 공개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함 이러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지지하였음 </td> </tr> </tbody> </table>	카테고리	세부 이슈	(1) 예시 공개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아님에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IPSASB가 자문보고서와 함께 예시 공개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함 이러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지지하였음
카테고리	세부 이슈				
(1) 예시 공개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아님에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IPSASB가 자문보고서와 함께 예시 공개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함 이러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지지하였음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카테고리	세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바탕으로 Staff는 예시 공개초안이 IPSASB의 프로젝트 추진 방향·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이해관계자 의견의 반영방법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
	(2) 차입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 예비견해(모든 차입원가 비용화)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남 - Staff는 IPSASB 예비견해가 현행 IPSAS 5,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함
	(3) 공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은 IFRS 13의 공정가치 정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지지 의견을 보냄 - 다만, Staff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음 이슈의 경우 IPSASB가 ED, 'Measurement'의 개발 및 제한적 범위의 개념체계 검토(Limited-Scope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별 IPSAS에서 적용 중인 공정가치와 IFRS 13의 '공정가치'의 일치 여부 (b) 공공부문에서 "최고 최선의 사용" 개념의 적용 어려움 (c) 시장가치와 공정가치의 명확한 차별화 (d) 측정기준으로서의 대체원가와 공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측정기법으로서의 대체원가의 구별
	(Staff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 	
	(IPSASB 의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ssets): 안건 12호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를 위해 IPSAS 17, '유형자산'의 적용 시 재무제표 작성자가 직면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2014년 3월에 발행된 IPSASB 전략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2015년 6월에 IPSASB 업무계획에 편입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자산 통제의 의미, 분리

(componentization)의 개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간의 구분, 잔존 서비스 잠재력의 측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2017년 12월부터 프로젝트 연구가 중단되었다. 이후 2019년 6월에 회의에서 IPSASB가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를 수정하여 재추진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비로소 프로젝트가 재개되었다. 이후 2019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이슈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하였고, 이슈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지침의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제안되었던 흐름도(flowchart)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주로 흐름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분리·통제·평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 안건 12: 사회기반시설 자산(Infrastructure assets)				
12.2.2.	[사회기반시설 이슈 분석 흐름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9월 회의에서 IPASASB는 Staff에게 사회기반시설 이슈 분석에 적용할 흐름도(flowchart)를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T/F는 흐름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함 			
	단 계	수 정	내 용	비 고
	Decision 1	해당 없음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해당사항 없음
	Decision 2	수정 전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른 구체적인 IPSASB 지침이 있는가?	관련 지침이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를 직접 다루며, 실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 여부까지 판단
		수정 후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른 충분한 IPSASB 지침이 있는가?	
	Decision 3	수정 전	해당 이슈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의 기능을 저해하는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와의 관련성을 묻는 것으로 확장
수정 후		해당 이슈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는가?		
Decision 4	수정 전	해당 이슈와 관련된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비권위적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를 다루면서 원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기존 적용의 일관성을 더해줄 수 있을 때임	
	수정 전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Decision 5	신설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	사회기반시설 특유의 이슈인 경우 신규 지침 개발이 필요함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Appendix 12.2.2C: Flowchart</p> <pre> graph TD D1{Decision 1: Is the issue prevalent in the public sector?} D2{Decision 2: Is there sufficient IPSAS guidance that already addresses this issue in the public sector?} D3{Decision 3: Is this issue related to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D4{Decision 4: Is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necessary to enhance consistency of application?} D5a{Decision 5: Is the issue relevant to other projects?} D5b{Decision 5: Is the issue relevant to other projects?} D1 -- Yes --> D2 D1 -- No --> N1[No further guidance is necessary. Develop Basis for Conclusions.] D2 -- Yes --> D4 D2 -- No --> D3 D4 -- No --> N2[No further guidance is necessary. Develop Basis for Conclusions.] D4 -- Yes --> D5a D3 -- No --> N1 D3 -- Yes --> D5b D5a -- No --> N3[Develop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D5a -- Yes --> L[Liaise with other Task Forces (consider developing additional guidance where appropriate).] D5b -- No --> N3 D5b -- Yes --> L L --> D1 </pre> <p>(Staff 제안사항) ○ 정보 제공 목적의 안건이므로 제안사항 없음</p> <p>(IPSASB 의결 결과) ○ 해당사항 없음</p>
<p>12.2.3.</p>	<p>[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의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7, '유형자산' 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자산이므로 각각 구분지어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이 단일 자산이거나 혹은 토지가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분이라는 이슈 제기 • 해당 이슈에 대한 흐름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 그렇다.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에 세워진 사회기반시설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충분한 IPSASB 지침이 있는가? ☞ 그렇다. IPSAS 17, '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문단 21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유형</p>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는가? ☞ 적용되지 않음(판단 불필요)</p> <p>[Decision 4]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 그렇다. 토지를 사회기반시설과 구별하여 회계처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권위적 지침이 필요하다.</p> <p>[Decision 5]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 ☞ 그렇지 않다. 토지를 사회기반시설과 구별하여 회계처리하는 이슈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만 한정된다.</p> <p>→ T/F의 의견: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을 구별하여 회계처리하는 추가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p> <p>(Staff 제안사항) ○ 사회기반시설과 토지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추가 지침(IG, BC)을 개발할 것</p> <p>(IPSASB 의결 결과) ○ T/F 및 Staff의 제안과 같이 사회기반시설과 토지의 구별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p>
12.2.4.	<p>[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통제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통제조건은 취득 실체와 운영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이 복잡할 수 있음 • 해당 이슈에 대한 흐름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통제 결정은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충분한 IPSASB 지침이 있는가? ☞ 그렇지 않다. IPSAS 17에서는 위의 상황에 따른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는가? ☞ 그렇다. 통제 결정에 관한 명백한 지침의 부재는 유용한 정보 제공과 회계 책임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p> <p>[Decision 4]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p>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적용되지 않음(판단 불필요)</p> <p>[Decision 5]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통제 결정 이슈는 유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p> <p>→ T/F의 의견: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통제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Staff와 Task Force는 ‘측정’, ‘유산’ 프로젝트 T/F와 협업해야 한다.</p> <p>(Staff 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의 통제 조건과 관련된 추가 지침(AG, IG, BC)을 개발할 것 <p>(IPSASB 의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및 Staff의 제안과 같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의 통제 조건과 관련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
12.2.5.	<p>[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평가의 복잡성으로 인해 토지를 사회기반시설과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함 • 해당 이슈에 대한 흐름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평가 이슈는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공공부문은 많은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는데, 역사적 원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활성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충분한 IPSASB 지침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그렇지 않다. IPSAS 17에 토지와 다른 유형자산은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규정은 없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용한 정보 제공과 회계책임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p> <p>[Decision 4]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적용되지 않음(판단 불필요)</p> <p>[Decision 5]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별도로 평가하는 이슈는 ‘측정’, ‘유산’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p>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data-bbox="346 413 1244 479">→ T/F의 의견: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평가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Staff와 Task Force는 ‘측정’, ‘유산’ 프로젝트 T/F와 협업해야 한다.</p> <p data-bbox="346 502 502 532">(Staff 제안사항)</p> <ul data-bbox="346 544 1142 574"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추가 지침(AG, IG, BC)을 개발할 것 <p data-bbox="346 606 540 636">(IPSASB 의결 결과)</p> <ul data-bbox="346 648 1244 713" style="list-style-type: none"> ○ T/F 및 Staff의 제안과 같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의 평가에 관련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

4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포럼 안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주관하는 제2회 IPSASB 리서치포럼(the 2nd IPSASB Research Forum)이 2020년 6월 17일 노르웨이 오슬로 드람맨(Oslo-Drammen)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리서치 포럼은 2019년 9월 17일 이탈리아 나폴리(Naples)에서 개최되었으며, 학계 및 기준제정기구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IPSASB 리서치 포럼의 목적은 회계기준 제정과정과 현재 및 향후의 IPSASB 프로젝트를 학계와 연계시킴으로써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제2회 IPSASB 리서치 포럼 개최에 앞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논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IPSASB는 다음 각 주제별로 선정된 논문에 1,500달러(USD)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논문도 제출할 수 있으며 초록 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와 발표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

- 참가 자격: 제한 없음
- 연구 주제

연구 주제	배경 또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표시 the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 the Public S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기타포괄손익 개념을 중심으로 IAS 1, '재무제표 표시'와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검토 - GFS와의 연계 강화를 고려한 재무제표의 형식 개편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 보고(중·소 공공부문 실체 재무보고) Differential Reporting (Financial Report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Public Sector Ent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규모 공공부문 실체를 위한 별도 규정의 개발 가능성 평가 - 공공자금 사용에 따른 동일 회계책임 부여, 규제기관의 역할, 국가별 요인 등 공공부문 특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할인율: 사용 및 산정 근거 Discount Rates in the Public Sector: Rationale for their Use and Deter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마이너스 금리 추세로 장기자산·부채 측정에 적용할 할인율의 적정성 이슈 대두 - IPSAS의 현행 할인 관련 규정의 개념적 토대 및 규정 간 일관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의 공시 Disclosures of Tax Expendi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투명성 및 회계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관심 증대 -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의 조세비용 및 조세지출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세비용(별도 비용으로 표시) vs 조세지출(수익에서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

제출방법: 이메일(VanessaMello@ifac.org) 접수

- 연구비 신청 논문: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문 초록 제출 후 선정된 경우 2020년 5월 10일까지 논문초안 제출
- 연구비 비신청 논문: 2020년 5월 10일까지 논문초안 제출

연구자는 IPSASB 리서치포럼에서 논문 초안 발표 후 학계 및 IPSASB의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을 2020년 9월 8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IPSASB 3분기 정례회의(파리, 프랑스)에서 최종 발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resources/call-papers-2nd-ipsasb-research-forum>
https://www.ifac.org/system/files/publications/files/191216-Extended-deadline-Call-for-academic-papers_0.pdf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을 발간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은 국가결산 개설,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디브레인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12.9),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된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과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및 2018 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결산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2019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19일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총 12차에 걸쳐 전국 8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원주, 세종)에서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작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제12차 재무결산실무 세종교육(11.7),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의 이해,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결산 담당자들이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수행 결과 12회차에 걸쳐 총 1,540명(전년도 1,289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63

점(전년도 4.64), 강의 만족도는 4.57점(전년도 4.58), 교육환경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74)으로 안정된 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만족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수료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2020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개설된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2019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양 솔비치에서 「2019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장이 참석하여 결산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은 중앙관서 재무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 결산에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그 소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11.22), 양양 솔비치〉

기획재정부 이남희 사무관은 ‘결산업무 의의 및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임종권 회계사는 재무결산 오류 최소화를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및 주요 오류사례별 인포그래픽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 이주환 과장은 차세대 dBrain 시스템 개선사항을 설명하였다.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두 번째 해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지원 개선 등으로 행사 만족도(4.84/5.0만점)가 전년(4.81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4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부터 국가회계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앙관서에 적합한 교육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자, 해당 부처에서 국가회계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교육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요청에 따라 10월 30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외무주무관 및 외무행정관 5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임종권 회계사는 국가회계제도의 이해와 국가회계 실무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회계 실무부문에서는 지출 및 물품취득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오류를 감사원 지적사항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지출 및 물품담당자의 업무 처리 오류가 재무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업무 처리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은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서울교육(11.20), 서울지방조달청〉

「2019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2개 도시(경기,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제주, 순천,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부산)에서 실시되었고, 총 5,704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 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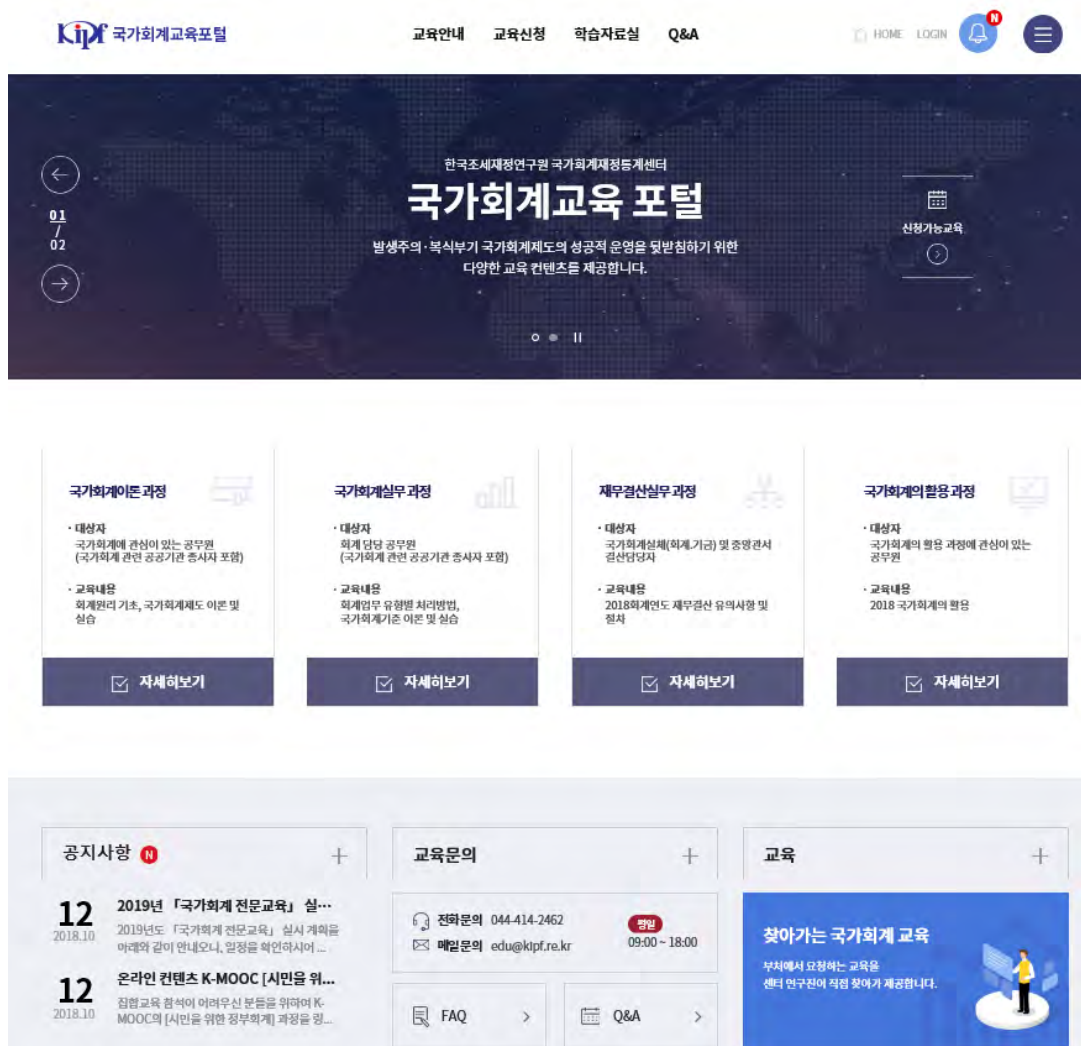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물품 관련 디브레인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국가회계교육 포털 개편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신청하고, 관련 국가회계교육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회계교육 포털이 신규로 개편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의 일환으로 수강생들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중점으로 둔 새로운 국가회계교육 포털을 202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홈페이지의 주요 개선 기능은 ①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신청하거나 교육자

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② 교육과정의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등록되어 취소자가 생길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며, ③ 사이버 교육 과정들을 더욱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신규 국가회계교육 포털의 주소는 <https://www.kipf.re.kr/edu.do>이며, 기존 홈페이지는 2020년 1분기 중 서비스 종료 예정이다. 수수료 발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수증을 발급받기를 바란다.



〈신규 국가회계교육 포털〉

03

재정통계 동향

1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6일(목)에 발표한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2018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83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17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66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50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8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78.0조원(GDP 대비 56.9%)으로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전년과 동일하다.

일반정부 부채는 759.7조원(GDP 대비 40.1%)으로, 전년(735.2조) 대비 24.5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전년과 동일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7.6조원(GDP 대비 20.5%)으로 전년(378.5조) 대비 9.1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 0.1%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1,044.6	56.9	1,078.0	56.9	33.4	0.0
A. 일반정부 부채(a+b-c)	735.2	40.1	759.7	40.1	24.5	0.0
a. 중앙정부	683.4	37.2	711.5	37.6	28.0	0.4
b. 지방정부	63.9	3.5	60.0	3.2	△4.0	△0.3
c. 내부거래	12.1	0.7	11.7	0.6	△0.4	△0.1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378.5	20.6	387.6	20.5	9.1	△0.1
a. 중앙 공기업	345.8	18.8	353.9	18.7	8.1	△0.1
b. 지방 공기업	41.2	2.2	41.8	2.2	0.6	0.0
c. 내부거래	8.5	0.5	8.2	0.4	△0.3	△0.1
C. 내부거래	69.2	3.8	69.3	3.7	0.2	△0.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를 편집

2) 부채 항목별 현황

2018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74.0조원, 차입금 121.8조원, 기타미지급 182.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채무증권	756.8	72.4	774.0	71.8	17.2	△0.6
■ 차입금	117.8	11.3	121.8	11.3	4.0	0.0
■ 기타 미지급	169.9	16.3	182.2	16.9	12.2	0.6
합 계	1,044.6	100.0	1,078.0	100.0	33.4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28.0조원 증가 및 4.0조원 감소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 거래는 감소(0.4조)하여 전년 대비 24.5조원 증가한 759.7조원(GDP 대비 40.1%)이고 GDP 대비로는 전년과 동일하다.

가) 중앙정부 부채

2018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683.4조원(GDP 대비 37.2%) 대비 28.0조원이 증가한 711.5조원(GDP 대비 37.6%)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중앙정부	683.4	37.2	711.5	37.6	28.0	0.4
■ 회계·기금	645.4	35.2	675.4	35.7	30.0	0.5
■ 비영리기관	50.2	2.7	49.4	2.6	△0.8	△0.1
■ 내부거래	△12.3	△0.7	△13.3	△0.7	△1.0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1) 중앙회계·기금

2018회계연도의 중앙회계·기금은 전년 645.4조원(GDP 대비 35.2%) 대비 30.0조원이 증가한 675.4조원(GDP 대비 35.7%)으로 산출되었다.

(채무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발행한 공채가 3.1조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19.0조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3.9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 국채	626.8	650.5	23.7
■ 국고채	550.2	569.2	19.0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2	8.0	0.8
■ 국민주택채권	69.4	73.3	3.9
◆ 공채	22.2	19.1	△3.1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7	5.8	△3.9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	13.3	0.7
◆ 자기 국·공채	△120.2	△118.4	1.8

출처: 2018회계연도 기금별 결산보고서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및 BTL 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3.0조원, 1.6조원 증가하였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금액

(단위: 조원)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 청약저축	65.3	68.3	3.0
◆ BTL 미지급금	8.0	9.6	1.6

출처: 2018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2) 비영리공공기관

2018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0.2조원(GDP 대비 2.7%) 대비 0.8조원이 감소한 49.4조원(GDP 대비 2.6%)으로 산출되었다.

기관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하여 금융부채가 감소(△1.5조)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채권 인수자금 조달, 기업정상화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0.3조)하였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18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3.9조원(GDP 대비 3.5%) 대비 4.0조원이 감소한 60.0조원(GDP 대비 3.2%)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63.9	3.5	60.0	3.2	△4.0	△0.3
▪ 회계·기금	64.0	3.5	59.5	3.1	△4.5	△0.4
▪ 비영리기관	1.0	0.1	1.0	0.1	0.1	△0.0
▪ 내부거래	△1.1	△0.1	△0.6	△0.0	0.5	0.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1) 지방회계·기금

2018회계연도의 지방회계·기금은 전년 64.0조원(GDP 대비 3.5%) 대비 4.5조원이 감소한 59.5조원(GDP 대비 3.1%)으로 산출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자치단체

전년 45.7조원 대비 0.2조원 감소한 45.5조원으로, 자치단체별 증감을 살펴보면 부산(0.2조), 대구(0.1조)가 증가하였고, 인천(△0.2조), 전남(△0.2조), 충남(△0.1조) 등이 감소하였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18.3조원 대비 4.3조원 감소한 14.0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4.3조) 등의 사유로 감소하였다.

(2)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1.0조원 대비 증감내역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378.5조원(GDP 대비 20.6%) 대비 9.1조원 증가한 387.6조원(GDP 대비 20.5%)으로 집계되었다. 중앙(8.1조) 및 지방(0.6조)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2.1조), 한국가스공사(2.3조), 한전·발전자회사(5.6조) 등 부채가 8.1조원 증가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SH공사(0.2조), 서울교통공사(0.4조) 등 부채가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비금융공기업 부채	378.5	20.6	387.6	20.5	9.1	△0.1
▪ 중앙 비금융공기업	345.8	18.8	353.9	18.7	8.1	△0.1
▪ 지방 비금융공기업	41.2	2.2	41.8	2.2	0.6	0.0
▪ 내부거래	8.5	0.5	8.2	0.4	△0.3	△0.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LH) 임대물량 확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1.4조)이 증가하였으나, 차입금·공사채 상환(△7.0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한국가스공사) LNG선박 관련 금융리스부채(0.2조)가 증가하였고, 차입금 증가(3.3조) 등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증가하였다.

(한전·발전자회사)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6조원 증가하였다.

3) 추세 분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2015년 최초 감소 전환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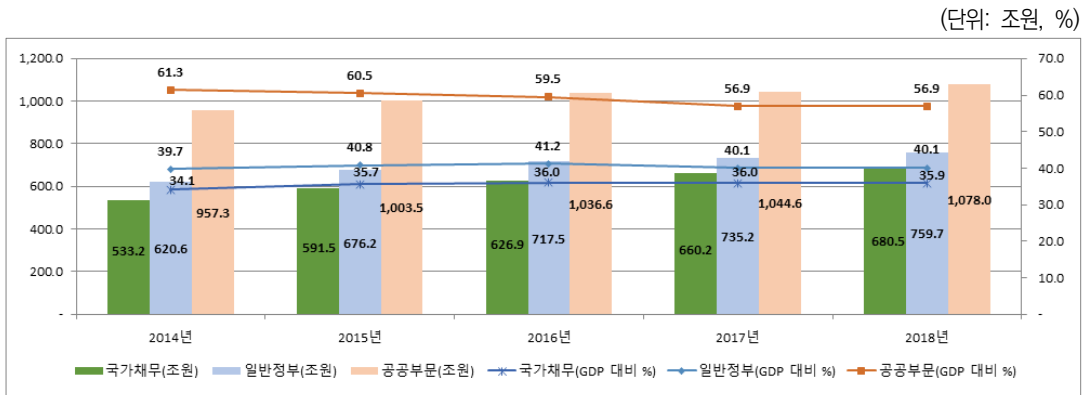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2015년) 1.6%p → (2016년) 0.3%p → (2017년) 0.0%p → (2018년) △0.1%p

일반정부부채(D2): (2015년) 1.1%p → (2016년) 0.4%p → (2017년) △1.2%p → (2018년) 0.0%p

공공부문부채(D3): (2015년) △0.8%p → (2016년) △1.0%p → (2017년) △2.6%p → (2018년) 0.0%p

〈부채 유형별(D1, D2, D3)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를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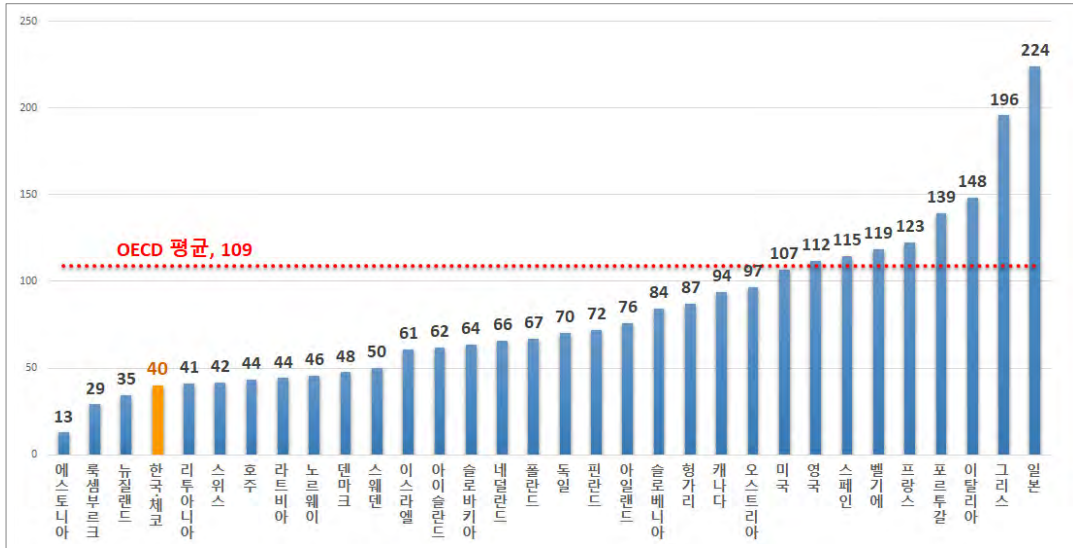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8년 GDP 대비 40.1%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3.8%)으로 금년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증가(9.1조)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2018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2 2019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가. K-IFRS 기준서 제·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K-IFRS의 제·개정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

나. 2019년 의무적용 주요 K-IFRS 기준서 제·개정 내용

기준서	제·개정 주요 내용
제1116호 리스 제정	<p>(제정 사유) 기존에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자산·부채를 각각 인식하나, 운용리스의 경우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부채비율 파악이 어려움</p> <p>(주요 내용) 새로운 리스 기준서 제정으로 운용리스를 포함한 모든 리스(단기 및 소액리스자산 제외)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p>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 제정	<p>(제정 사유) 기존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성한 경우에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회계처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p> <p>(주요 내용)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p> <p>☞ (수용가능성 高)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p> <p>(수용가능성 低)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p>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p>(개정 사유) K-IFRS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에 속하는 투자지분의 경우, K-IFRS 제1109호 또는 K-IFRS 제1028호의 손상 요구사항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음</p> <p>(주요 내용)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 K-IFRS 제1028호의 요구사항보다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p>

기준서	제·개정 주요 내용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개정 사유) 중도 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지와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p> <p>(주요 내용)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 특성과 관련하여 계약을 조기청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의 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을 명확히 함.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의 회계처리 원칙을 결론도출 근거에 제시</p>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p>(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p> <p>①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②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p> <p>(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측정</p> <p>상기 ②를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p> <p>(자산인식 상한효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 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 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p>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사전 안내」, 2018. 7. 16.

다. 제·개정 K-IFRS 기준서 영향

2019년 의무 적용되는 제·개정 K-IFRS 기준서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은 특히 리스 이용 기관의 회계처리가 변경되었다. 운용리스 이용자도 자산과 부채를 계상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시 요구사항이 늘어나 추가적인 주석 작성에 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서	결산에 미치는 영향
제1116호 리스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리스기준서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기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리스부채 계상에 따라 특히 운용리스 이용이 많은 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영업비용이었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됨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등 - 새로운 리스기준서 제정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상 계정과목과 주석 등에 반영 필요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회계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지침 제공 성격의 개정이므로 기관 결산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 없음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개정사항은 없으나, 주석 중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에 개정효과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됨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재무정보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및 국책연구기관은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한 정보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만 전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제공하여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국세청 고시로 한국가이드스타가 지정되어 한 국가이드스타에만 전체 공익법인 결산서류가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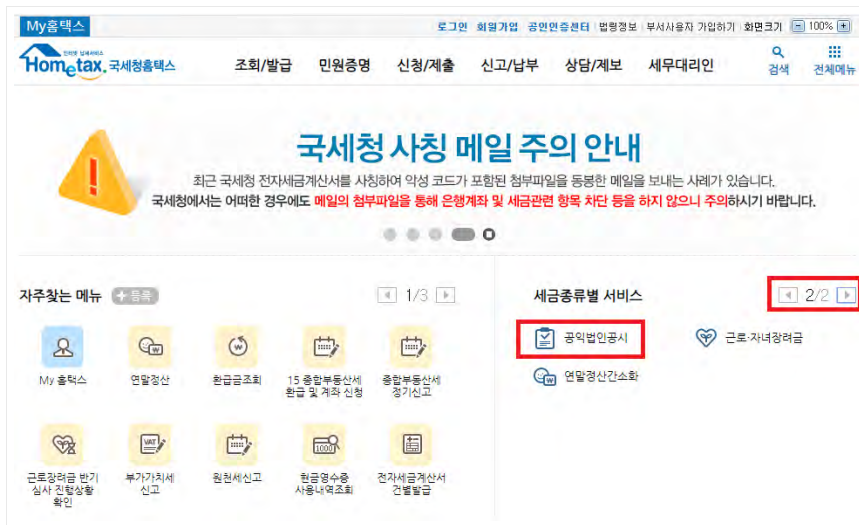
이러한 공익법인 정보 제공의 한계로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되었으나 원활한 공익법인의 정보 제공을 위해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공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2019년 10월 10일 폐지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 및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다운받아 공익법인의 현황 및 재무정보, 기부금 사용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공익법인 결산서류 열람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2 번째 페이지에서 '공익법인공시' 선택



- 2)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제공신청 및 내려받기' 선택



3)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제공신청서 작성하기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제공신청서 작성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등록한 결산서류등을 공시기간별, 공익사업유형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민원접수번호	신청연도	영수증/기타 서류 제공여부	재무상태표/영입성채표 제공여부	공익법인 제공유형	제출 공시연도	대응코드	대리인명
조회할 내역이 없습니다.								

대리인명은 신청 1회당 3회로 제한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

- 공시된 결산서류등 불성실 또는 오류 내역 발견 시에는 공익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청 공익법인 정보관리담당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의사실
 -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의 모든 정보는 공시의부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공시자료이므로, 국세청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정보제공까지 일차시 2차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의 공시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마다 제공되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제공받은 결산서류등의 공시내용을 일부 상고자료, 자체 교육목적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상속에 및 종여예비' 제50조의3에서는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차 등을 위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고려할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한 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유 의의사항 중 '변'을 위반한 경우
 - ②주주명성이 불합격을 취소한 경우
 - ③해당 공익법인등이 불합격이나 취소한 경우
 - ④해당 공익법인등이 「국세기본법, 회계조치에 대한 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병단이 공개되는 경우
 - ⑤해당 공익법인등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 ⑥기타 해당 공익법인등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기](#)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 신청서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등록한 결산서류등을 공시기간별, 공익사업유형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신청연도 구분: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신청내역

결산서류등 의무공시 서식 재무상태표, 영입성채표

국회 한울 한리 사회복지 의료 예술 문화 기타 현재

신청연도: 2010 년 ※ 2015년 12월로 공시한 2015년 12월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공시자료부터 제공됩니다. (신청일 부속 제2963호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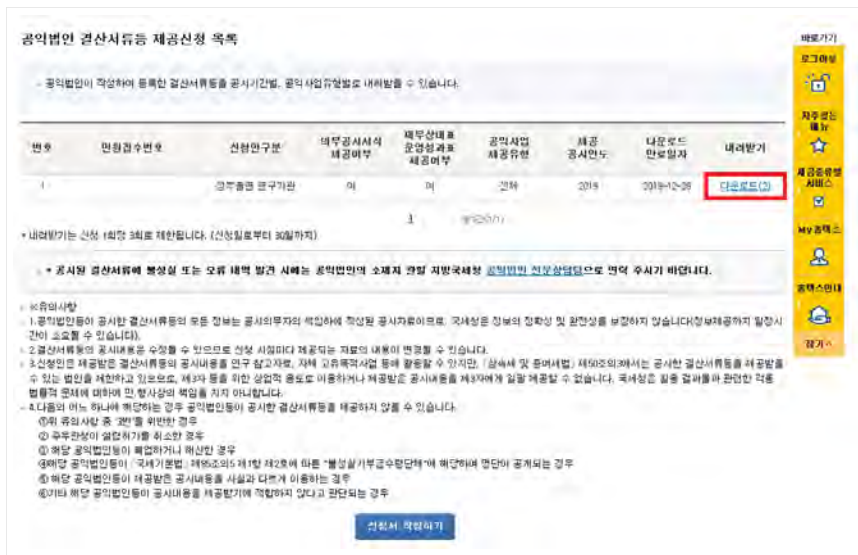
주주의사실

-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모든 정보는 공시의부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공시자료이므로, 국세청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정보제공까지 일차시 2차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의 공시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마다 제공되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제공받은 결산서류등의 공시내용을 일부 상고자료, 자체 교육목적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상속에 및 종여예비' 제50조의3에서는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차 등을 위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고려할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한 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유 의의사항 중 '변'을 위반한 경우
 - ②주주명성이 불합격을 취소한 경우
 - ③해당 공익법인등이 불합격이나 취소한 경우
 - ④해당 공익법인등이 「국세기본법, 회계조치에 대한 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병단이 공개되는 경우
 - ⑤해당 공익법인등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 ⑥기타 해당 공익법인등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서 작성하기’선택 후 신청인 정보(법인명, 전화번호, 신청인 구분 등) 및 신청내용(공시내용 범위, 공익법인 유형, 공시연도 등)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내려받기



신청서 제출 후 즉시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자료는 엑셀과 텍스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회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내용을 연구자료, 고유목적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제3자 등을 위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프랑스 공적연금 회계제도

프랑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¹⁾에서 수행한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수시과제인 OECD 특정 국가의 연금제도에 관한 심층조사를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프랑스와 스위스의 회계기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결과이며, 스위스 사례는 2020년 1분기 뉴스레터에서 소개될 예정임

가.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²⁾ (2018.10)」에 이어 **우리나라와 다른 연금회계제도를 구축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사례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하였다.

2018년도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의 처리 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 OECD 발생주의 도입 국가 중 15개 국가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있었다. 이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³⁾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본문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만 표시하고 있다. 다만, 12개국에 포함된 스위스는 과거에 주석에만 표시하다 2017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였던 국가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각 국의 회계기준 제정 전문가 또는 연금회계 전문가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하였으며, **프랑스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에서, 스위스는 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1)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 관련 전문 자문기구로서, 2008년 12월 30일 연례예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비영리 또는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의 회계기준을 설정하며, 중앙정부와 정부기관, 지방공공기관, 사회보장기관 모두 관할한다. 프랑스 중앙정부 회계기준만을 제정하던 이전의 공공회계기준위원회(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해 프랑스 정부 전체의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www2.economie.gouv.fr/cnocp-en>

2) 2018년 4분기 뉴스레터 특집 「연금충당부채 주요국(해외) 사례」 참조

해당 기관들은 공적 연금제도 개요 및 회계처리 현황, 그 배경과 근거, 기타 현행 이슈에 대해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프랑스 연금회계제도 조사결과는 이번 분기에, 스위스 사례는 2020년 1분기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나.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층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각 층은 각각의 목적을 반영한 모델에 대응된다.

- 1층: 고령층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비기여금 성격의 공공부문제도
- 2층: 공공부문이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제공하는 의무적, 재분배적인 연금제도
- 3층: 의무적 보험형 연금제도 또는 프랑스와 같은 의무적 재분배적 제도
- 4층: 개인적, 비의무적인 보험형 연금제도

〈프랑스 연금제도의 분류〉

층	목적	모델
1층	재분배-빈곤퇴치	“재배분(Répartition)” 메커니즘
2층	자립 수단이 될 수 있는 재분배적 제도와 보험형 제도	재분배적 제도: “재배분(répartition)” 메커니즘
3층		보험형 제도: 확정급여/ 확정기여/ 포인트제도 ¹⁾ / 명목계정 ²⁾
4층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달성	보험 모델 (예: IFRS 17 범위에 포함)

주: 1) 근로기간 동안 소득에 근거하여 받은 연금 포인트를, 퇴직 시점에 연금 포인트 합계에 해당 가치를 곱한 금액 만큼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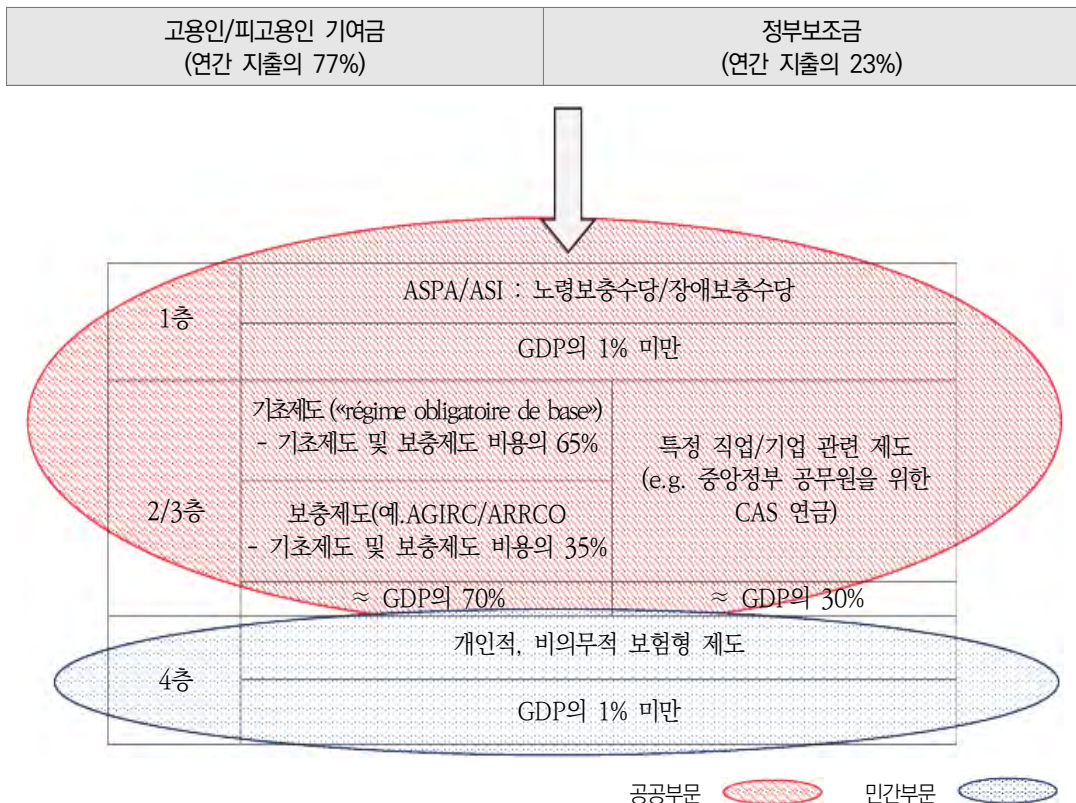
2) 계좌에 들어올 기여금과 받을 이자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록하고, 퇴직 시점에 명목 자본금을 기대수명에 기초한 공식으로 계산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출처: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CNoCP),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특히 프랑스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재배분’ 메커니즘 (répartition mechanism)으로, 이는 부과방식(pay as you go)과 같은 재무적 도구를 이용하여 세대 간 연대 정책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재배분’ 메커니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도의 기여적, 비계약적 성격, 의무적으로 가입
- 기여금액은 전적으로 위험을 반영하여 계산되지 않음. 이는 민간 보험제도와 큰 차이점임
- 납부한 기여금과 사회급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받은 기여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
- 제도의 전체 잔액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
- 일반적으로 매년 법에 의해 확정되는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프랑스의 연금제도의 층별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층별 GDP 비율에 대한 전체적 개요를 보여 준다. 시스템의 복잡성과 구조의 다양성 때문에 일부 제도는 두 개 층의 성격을 가지므로 2층 및 3층에 분류될 수 있다.



출처: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CNoCP),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2)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공적연금제도 법적 설립 배경

사회보장법 L.111-1조에 따르면 국가 연대의 원칙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라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연금개혁법」 2003-775호 1조에서 국가가 사회적 계약 중심인 재배분 성격의 연금제도(répartition pension system)를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적절한 생존수단을 갖도록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재배분(repartition) 개념과 세대 간 연대의 목표를 확립하였고, 일정 시점에 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프랑스 헌법에 종속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법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제도의 유형, 수혜자 및 고용주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레벨, 운영 주체의 다양성 및 수많은 입법 절차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다음 표는 이러한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의 파노라마〉

제도의 유형				6유형의 공무원연금 운영관리자				제도의 유형		
보충적 제도				공무원연금 (250억 €)				보충 제도		
보충적 제도	독립적 보충적 제도 (7억 €)	보충적 연금 제도 (7억 €)	관리보충연금제도운영회(250억 €)		국가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충연금 기금 (90억 €)	공무원연금 (250억 €)		그 외 특수종 제도	보충 제도	
			비관리보충연금제도운영회(510억 €)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기금 (520억 €)				
기초제도	지역연자 노령보험 전국공단, 자유직업 노령보험 국가기금, 프랑스 변호사 기금 등 (90억 €)	농업 사회보장 기금 (80억 €)	농업 사회보장 노동자 (60억 €)	국가노후보험기금 (일반제도) (1,130억 €)		지방공무원 연금기금 (180억 €)	국가연세연도 표시 연금기금 (20억 €)	실도형 퇴직 예비기금, 파리 교통공사 퇴직 연금기금, 등 (159억 €)	완성된 제도	
				국가기금						국가기금
피보험자	비농업 노동자 및 자유업종 종사자	농업 경영인	농업 노동자	영금 노동자	비정규직	행정 및 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관계자	국가노동자	특수종 제도의 직원	피보험자
고용주		민간 농업 기업		민간부분: 상업, 산업, BTP, 용역	공법실 계약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정부	프랑스 철도노조, 파리 교통공사 등	고용주

주: 제도를 운영하는 실체의 2016년 재무제표 수치를 반영한 표임

출처: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 사회보장 부문 체계(Organ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그룹에 속한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에 따라 노령연금, 질병·출산·장애·사망급여, 산재사고 보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할 수 있다. 국가노후보험기금 등의 기초제도와 임금, 농업 및 비농업 등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기초제도 및 보충제도로 구성된다.

사회보장 부문은 「사회보장예산법」 또는 통상적인 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부분의 실체는 하나 이상의 제도와 연결된다. 사회보장연금제도는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세금 및 관세, 재정지출 등의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된다. 특히 누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부 채상환기금으로 상환하는 것 외에도 일반 제도의 재무적 통합, 중앙정부의 적자 보전, 일반제도 가입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는 중앙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유족 복지 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공무원은 사회보장연금제도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별도의 기금이나 재원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며, 예산법에 의해 퇴직 대상 공무원을 위한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은 ‘재배분’ 메커니즘(repartition mechanism)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공무원과 국가회계실체가 고용계약이 아닌 법에 명시된 관계에 기반하며, 민간부문과 달리 ‘재배분’ 메커니즘(repartition mechanism) 성격의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다.

3)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선 노력

프랑스의 퇴직자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OECD working paper 제1553호 「프랑스의 보편적 연금제도 시행의 목표와 과제」(2019.5)에서 공적연금제도로 프랑스 고령층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42개의 의무적 제도로 구성된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제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연금제도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그들이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보편적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중에 있다.

다. 공적연금 회계제도

1) 사회보장 부문의 재무제표 작성 범위 및 회계처리

사회보장 하위부문과 정부의 하위부문은 독립적이며, 사회보장 하위부문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 하위부문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³⁾하였다. 사회보장 하위부문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하위부문 재무제표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combined statements)를 작성한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기여금은 '수익'으로 처리되고, 연금급여 지급 시 '비용' 처리되며, 차기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부채로 인식한다. 미래 연금지급 추정금액 등은 주석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다.

프랑스는 회계 개념체계 제정과정에서 사회보험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미래 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주된 논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미래 지급의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공공부문화계 개념체계의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한 논의 끝에 2016년 4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실체의 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서(Opinion 2016-01)를 승인하였다. 당 의견서에서는 대부분의 제도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보고주체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운영실체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계연도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간부문 종업원과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종업원의 기초 및 보충연금제도에만 적용된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연금제도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법적 실체에 의해 운영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 지급은 현재 의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재배분" 메커니즘은 수혜자 간의 미래 보고기간까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보고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한 약속만이 제도를 운영하는 실체의 현재 의무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관점에 따라 기초제도(2층), 보충제도(3층)의 구

3) 제19차 OECD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Session 7-공공계정 통합: 도전과 성공요인」[프랑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CNoCP)]

분 없이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표시된 주식과 사회보장 부문 주식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의견서에서는 일관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작업 수행을 권고한다.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체계 회계처리 요약

-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실체로서,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 기여금 및 연금지급: 당기 수익 및 비용인식,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며**, 추정 총 예상 지급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 근거: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 지급은 현재 의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음
- 국가회계 비교: 국가회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실제 국민연금 회계처리와 매우 유사함

2)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은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의 성격 때문에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시점에 **미래 연금을 지급할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보고기간 재무제표에는 **지급이 확정된 연금부채를 제외한 어떠한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에 의무가 존재하고, 관련 비용이 연도별 의결된 예산 내에 포함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보고실체가 아닌 국가만이 세대 간 연대정책을 적절히 이행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기간 재무제표에는 **지급이 확정된 연금부채를 제외한 어떠한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발표된 IPSAS 42 「사회보장급여」에서 적용하는 회계처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의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는 계약적이 아닌 **법적인 관계로 확정급여제도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IPSAS 39 「종업원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2006년도 회계기준을 마련할 당시, 확정급여제도와 ‘재배분’ 메커니즘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 측정방식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하여** 중앙정부 재무제표 주석에만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CNoCP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성격보다는 사회보장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석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공무원연금 회계처리 요약

-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 포함, 기여금 및 연금지급: 당기 수익 및 비용 인식,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정 지급액을 주석 공시함
- 근거: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 지급은 현재 의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다만 퇴직급여 성격 및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주석정보 제공
- 국가회계 비교: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본문 인식, 회계처리와 매우 상이함

3) 연금회계기준 제정 시 예산 고려 및 향후 과제

퇴직자는 퇴직을 하는 순간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체는 연금제도를 운용만 할 뿐 연금지급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안 의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프랑스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중앙정부 재무제표 주석과 사회보장부문 재무제표 주석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주석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및 추가 정보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 연금제도를 민간, 공공, 중앙정부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제도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에 매칭할 수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와 분류〉

구분	계층	민간부문	공공부문	중앙정부
공공영역	1층	노령보충수당(ASP), 장애보충수당(ASI) 등		
	2층	기초제도: CNAV ¹⁾ 등	기초/보충제도: SNCF ²⁾ , RATP ³⁾ 등	국가공무원 (CAS) 등
	3층	보충제도: ARRCO ⁴⁾ , AGIRC ⁵⁾ 등		
개인영역	4층	임의 가입의 보험형 연금제도		

주: 1. 1층과 2, 3층의 주황색은 국민연금, 2, 3층의 하늘색은 공무원 연금에 해당

- 1) 국가노후보험기금
- 2) 철도청퇴직예비금고
- 3) 파리교통공사직원연금고
- 4)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 5) 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1) 한국과 프랑스 공무원 연금제도 회계처리 비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의 노후소득 및 생활 안정의 보장을 제공한다. 국민연금의 총당부채 인식 여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금지급 의무가 국가 개개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점, 국제적 비교 관점에 따라 국민연금의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직업별·직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1층 및 2, 3층의 일부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데,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보장 하위부문과 정부의 하위부문은 독립적이라는 관점에 따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에서 배제하고, 공공부문은 「의견서 2016-01」에 따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제도 주석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 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회보장 부문 재무정보가 산출된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2) 한국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회계처리 비교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비슷한 목적을 가진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확정급여형제도⁴⁾인 경우 연금총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금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연금지급 총당 목적 자산의 투자운용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무원 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2, 3층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을 제외한 부분이 공무원 연금제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공무원과 고용 주체인 중앙정부가 법적인 관계라는 점과,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 성격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연금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만 기재하고 있다.

4)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이 확정된 경우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제도 회계처리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60세 거주자	근로자 및 기여금 지급할 수 없던 퇴직자	
회계처리 범위	국민연금기금을 국가통합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	민간부문 사회보장부문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범위에서 제외	공공부문 공공부문실체를 중앙정부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
총당부채 인식	×	×	
총당부채 주석기재	×	해당사항 없음	× (표시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견서2016-01에서 추가 정보 제공 권고)
회계처리 근거	① 연금지급 의무가 계약에 따른 의무 × ② 국제적 비교 가능성 ↑	사회보장부문을 중앙정부부문과 별개	재분배 메커니즘 → 연금지급 현재 의무 ×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CAS)	
사회보장제도 중복 가입	중복 가입 불가 (공무원 연금제도 독립적으로 존재)	중복가입 불가 (공무원 연금제도 독립적으로 존재)	
총당부채 인식	○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총당부채 산정)	×	
총당부채 주석 기재	○	○	
회계처리 근거	① 고용관계 ② 확정급여형제도(연금지급액 확정)	① 고용관계가 아닌 법적관계 (확정급여형제도 ×, IPSAS 「종업원 급여」 적용 ×) ② 재분배 메커니즘 → 연금 지급할 현재 의무 ×	

3) 시사점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국가회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사회보장제도)의 재무정보를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목적 적합한가?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장 하위부문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 하위부문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⁵⁾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와 별개로 사회보장부문의 결합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연금이 별도의 실체로서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나, 프랑스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의 자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 또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예산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일맥상통한다.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예산의 관리재정수지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정요소만 포함된 재무제표의 필요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금제도 조사가 연금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역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는가?

프랑스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공무원 연금제도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이라고 간주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게 미래 지급 의무를 측정할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급여제도의 성격도 일부 존재하고, 미래 예측 정보 제공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석으로 해당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 관계에 따른 급여를 연금으로 이연시킨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미래 지급 의무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등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프랑스 회계처리의 근거, 제도적 차이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동일하나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가져오므로, 프랑스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타 국가의 사례 연구를 거쳐 연금 회계처리 개선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5) 제19차 OECD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Session 7-공공계정 통합: 도전과 성공요인」(프랑스, CNoCP)

2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현황

가.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필요성

중앙정부의 결산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따라 수행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와 결산보고서의 분석 및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 센터의 국가회계팀은 1년 단위로 ‘국가회계제도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여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중앙관서 질의, 결산 시 이슈사항 등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① 내부 TF회의, ② 소위원회 및 ③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회계기준과 그 하위 기준인 국가회계예규에 대한 개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세스〉



그러나 1년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고 결산 종료시점(5월 말)부터 연말까지 TF가 운영됨에 따라 국회·감사원 지적 등 당면 과제에 국한하여 개선과제가 채택되고 전부 개정 등 장기과제 개정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TF 논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이 관리되지 않아, 매년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고,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일부 의결된 사항에 대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의위원 교체(임기 2년, 연임 가능) 등에 따라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장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현행 TF를 통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절차(이하 ‘연차개선’)는 유지하되, 이외는 별도로 장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세스 개선안〉



나. 프로젝트 진행 절차

국가회계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 PB)의 승인으로 시작되며, 팀 보고서(Team Paper: TP), 쟁점보고서(Discussion Paper: DP),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CP), 제안초안(Proposed Draft: PD) 순으로 진행된다. 각 과제별로 중요도 혹은 분량에 따라 1~3명의 센터 연구진으로 구성되며, 쟁점보고서 단계부터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가회계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는 형태를 장려한다.

기본적으로 각 과제를 수행하는 연도에 쟁점보고서를 완성하고 차기년도에 제안초안이 완성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1) 프로젝트 개요(PB): 1개월 내외

프로젝트 개요(PB)는 과제의 목적, 범위, 주요 쟁점, 타임라인, 산출물, 진행계획 등을 담은 개요서로 10~15페이지 분량으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시작을 내부적으로 승인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회계처리 기준과 현황, 제·개정 근거와 함께 문제점 또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여 해당 회계처리 개선의 당위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과제 진행에 따라 산출되는 개정안, 보고서 등 산출물의 종류와 투입 인력에 따라 예상되는 일정도 함께 제시한다. 향후 과제 진행을 위하여 센터에서 추진했던 관련 업무에 대한 연혁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2) 팀 보고서(TP): 2개월 + 1개월

팀 보고서(TP)는 각 쟁점별 구체적 개선방향을 검토하기 전 중간단계로 국가회계팀 내 의견수렴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담당 연구진에서 현황분석, 민간 및 해외 사례수집 등을 통해 이슈사항을 총망라한 팀 내부 회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연구진은 가능한 편의(bias) 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가회계팀 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 결산교육팀 또는 재정통계팀과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3) 쟁점보고서(DP): 3~6개월

쟁점보고서(DP)는 팀 내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쟁점을 도출·분석하여 각 항목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레퍼런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보고서는 연구 분량에 따라 착수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작성하되, 월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요약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쟁점보고서는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1~2명을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부 전문가는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섭외하되, 과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문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섭외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선임 시 연구진과의 TF를 구성하여 작성기간 동안 착수, 월별 중간보고, 마무리 등 최소 4회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보고서 작성 또는 제안초안 작성 시점까지 TF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필요 시 센터 내 연구진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과제의 수가 많아 연구진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제의 특성상 내부 연구진보다 외부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이 경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용역 위탁 시 팀 보고서 단계까지 완성 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프로젝트 개요 완성 단계에서 위탁할 수 있다. 팀 보고서 없이 위탁하는 경우 용역기간을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쟁점보고서 완성 후 학회 발표,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기고,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공시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국가회계제도심의회원에 송부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자문보고서(CP): 1개월 + α

자문보고서(CP)는 쟁점보고서의 각 이슈별 대안들에 대하여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서로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을 수렴할 수 있는 질문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슈를 구분할 수 있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 각 쟁점사항별로 혹은 전문 분야별로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자문보고서를 통한 의견수렴 주체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은 필수로 하며, 특별히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주제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회, 교수진, 회계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결산 주체, dBrain 등 시스템관리자, 정보 이용자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받는 형태는 회의 개최, 세미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며, 자문보고서 작성은 1개월의 기한을 두되 의견수렴 기간은 별도로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자문보고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의견이 다수 제기되거나 하나의 쟁점에서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맞서는 경우에는 쟁점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재작성하는 쟁점보고서에서는 자문보고서를 통한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삭제한 대안을 지지한 의견이 존재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재작성된 쟁점보고서는 다시 자문보고서로 형태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삭제할 대안이 없다는 연구진 판단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5) 제안초안(PD): 3~6개월(차기년도)

제안초안(PD)은 기준개정안 또는 신설안을 포함하여 국가회계 제도개선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작성된 보고서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기획재정부 보고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기준개정 또는 기준신설안의 논거, 장·단점 및 쟁점사항 중 선택되지 않은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국가회계기준 조항, 국가회계예규 문단뿐 아니라 향후 국가회계편람에 서술할 실무해설, 문단 제정 근거, 적용 사례도 함께 작성한다.

제안초안은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준개선 절차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TF 운영 시 완성된 제안초안은 센터의 개선요청 과제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초안의 기획재정부 보고시기는 국가회계 개선 절차의 진행시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상반기 내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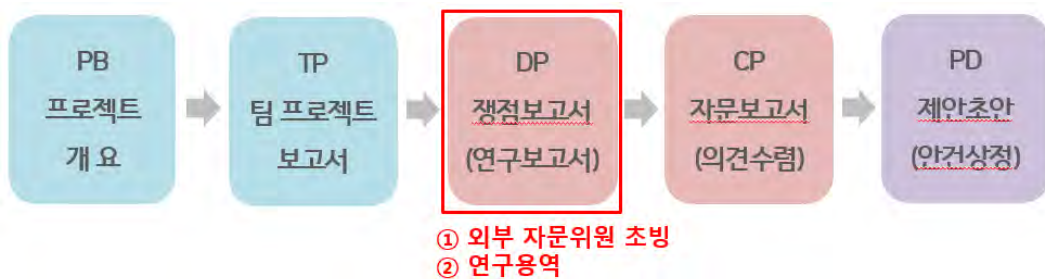
제안초안은 센터 내부적으로 확정된 보고서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에 공시한다. 제안초안의 국가회계제도개선 절차 외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회계재정통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6) 후속 조치

센터가 제시한 제안초안이 국가회계 제도개선 절차 중에서 수정, 첨가 또는 삭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자,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논의 과정은 회의록으로 별도 관리한다. 여러 가지의 이슈 중 합의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초안을 수정하고 근거를 남겨 놓음으로써 향후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 절차가 유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결서 서명 등 기획재정부와 관련 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센터가 제시한 제안초안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상정 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경우는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안초안이 1년 이상 제도 개선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보류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유효성 검토를 1개월 간 수행하여 유지, 개선, 추가연구 및 폐지 등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 발행되는 연차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아 관리한다.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진행절차〉



다. 2020년 진행과제

2019년에는 2020년 본격적인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몇몇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프로젝트 개요를 완성하였다. 일부 과제는 팀 보

고서 작성도 수행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2020년에 팀 보고서를 재 작성하고 팀 내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1) 용자 회계처리지침 개정

국가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용자회계처리 지침은 국가가 부담하는 금리 차이는 정책적 목적으로 현금을 보조해준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추정 회수 가능액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용자사업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비교를 통해 용자사업을 판단하는 현행 규정은 국가의 조달금리보다는 높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민간 등에 대여하는 사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단일계정과목으로 인식하는 용자보조비용에 대하여 금리보조 효과와 신용보조 효과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금리 변동 또는 조달금리 하락 시 재분류 방안 등 끊임없이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금 회계처리 개선

2018회계연도 기준 연금충당부채 940조원,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은 600조원 이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사업은 많은 정보 이용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의 사회보장제도 성격 유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채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IPSASB(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제도 관련 별도의 지침서(IPSAS 42 Social Benefits)를 제정하는 등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의 적정성, 공시의 정도, 국민연금 부채인식 등 현행 ‘연금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재검토와 동 지침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국가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과제로 선정하였다.

3) 재무보고 개선

2011회계연도 이후 8개년 동안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또는 국가 전체의 자산·부채 규모 이외에는 이슈화되지 않으며,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무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보고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재무보고 개선 과제는 크게 ① 결산보고서 체계 정비, ② 예산결산과의 연계성 강화, ③ 정보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등 세 가지 소과제로 구분하여 정보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라. 향후 진행과제

2020년에는 앞서 살펴본 3개의 과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이후 외부 요청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향후 진행과제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현재까지 이슈가 제기되었거나 내부에서 개선 필요를 요청한 과제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한 것이며, 향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하기 진행과제들을 보완하여 매년 말 발행 예정인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외부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분	과제명	주요 내용
회계기준 체계 확립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	질의회신 등 기준 해석 시 근거 마련
	국가회계처리지침 간 통합·분리	교환, 비교환 지침, 기타 자산부채 지침 폐지 등
	국가회계예규 하위 기준체계 정비	문단 제정 근거, 실무해설 등 체계 정비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수행		
	원가정보 세분화	프로그램집계단위를 (세부)단위사업까지 집계
	국립대학 회계처리 정비	대학회계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회계처리 정비
	측정 프로젝트	별도 지침 제정 방안, 현행 측정 관련 기준 재검토
정합성 제고		
	금융자산·금융부채	국민연금자산 등 국가의 특수성 vs 민간 정합성
	거래실질이 같은 회계처리 정비	우체국예금, 주택청약 / 임차계약, 리스 등
	보고기간 후 사건	임의로 시행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회계처리 제정
재정관리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재무정보 산출		
	예측 재무제표 작성	결산 심사 및 예산 편성 시 활용 가능
	계정과목 분석 Brief 발간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5년 이상 증감 변화 등

1 「2019년 재정통계실무협의회」 개최

지난 12월 12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통계팀),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 한국은행(지출국민소득팀, 자금순환팀)의 재정통계 산출 관련 협의를 위한 「2019년 재정통계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기준의 분기별 금융거래표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논의와, EU 회원국의 연금부채 공개 현황 및 추후 한국의 공개수준, 순채무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정통계실무협의회(12.12), 기획재정부 회의실〉

2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29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최지영 회계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방민식 회계사의 K-IFRS 제·개정사항,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이뤄졌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12.19),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3 2019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12월 30일(월)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사업결과 보고 및 자체평가를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9년 사업결과 보고 및 자체평가」 안건으로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12.30), 서울조달청 중회의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평가위원인 주인기 교수(연세대, IFAC 회장), 이장희 교수(충북대),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와 내부 평가위원인 문창오 부소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참석하여 위원별 개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2019년 사업 실적에 대해 'I. 계획, II. 사업집행, III. 환류 및 사업개선'으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96.5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집행 결과 및 환류 측면은 향상한 반면, 사업관리의 적절성은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센터의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잘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회계교육사업 중 국가회계정책 활용을 위한 시범(pilot)교육 결과(만족도 조사 등)를 분석하여 2020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

가회계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홍보사업의 경우 센터 및 국가회계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이외에 언론매체(신문 등) 활용과 같은 전문적인 계획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회계교육 만족도와 감사원 지적건수 등 현행 계량지표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계량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으며, 매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획 수립 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점수를 통한 추세분석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차년도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1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국가회계 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함

가. 개요

- 일시: 2019. 12. 6(금) 13:00~18:10
- 장소: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주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후원: 한국경제신문

< 주제 발표 및 토론 >

[세션 1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좌장] 권선국(경북대학교)

[발표1] 2019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2] 2019 IPSASB 주요 프로젝트 현황(임정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3]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조화에 관한 연구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3부] 라운드 테이블

[좌장]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발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옥동석, 인천대학교)

[토론]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이배(덕성여자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세션 1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 (발표1) 2019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첫 번째 주제인 「2019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은 한소영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첫째, 순자산변동표상 전기 기초순자산을 보고금액과 회계정책 변경누적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재무결산 Q&A와 결산작성지침에 반영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회계 관행(민간 회계처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퇴직수당충당부채에 대하여 연금충당부채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한 주석 공시 양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실무적으로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다수 발생하므로 결산 편의를 위하여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실무해설을 통해 제공하고, '임차개량자산' 등 관련 계정과목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회계편람 내에서 장기를 '1년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1년 초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타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의 정의 및 분류 등을 국가회계예규에 반영하고자 한다.

□ (발표2) 2019 IPSASB 주요 프로젝트 현황 (임정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두 번째 주제인 「2019 IPSASB 주요 프로젝트 현황」은 임정혁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표하였다. 현재 IPSASB는 다섯 가지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특성상 비교환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익인식원칙을 수행의무의 이행 정도와 연계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둘째, 현재 비교환비용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비교환비용에 대한 인식 및 측정 원칙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IFRS 16(리스)과의 일관성을 제고하되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리스이용자 뿐만 아니라 리스제공자에게도 사용권 모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현재 사회기반 시설 및 유산의 정의, 인식, 측정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PSAS 17(유형자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PSAS '측정'을 개발하여 개별 기준에 있는 측정 기준의 정의, 적용지침, 결론 도출 근거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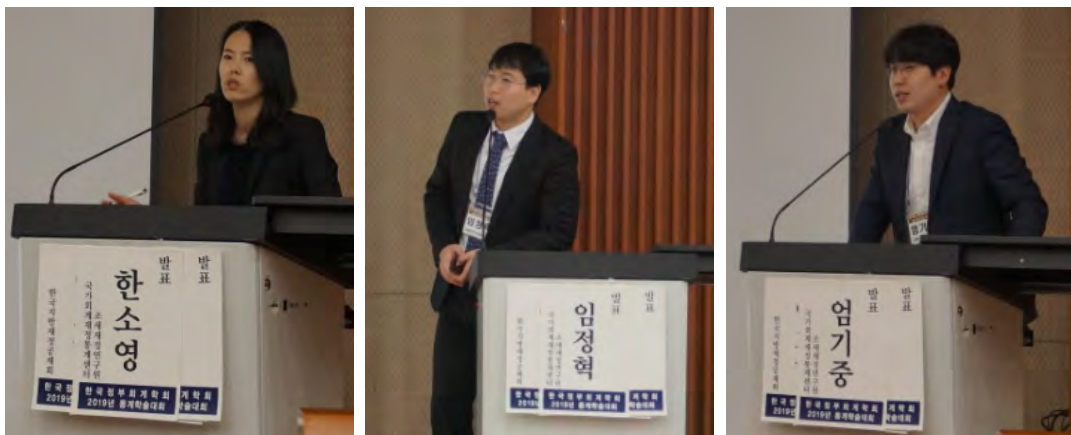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방, 공공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IPSAS가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IPSAS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 **(발표3)**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에 관한 연구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세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에 관한 연구」는 엄기중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 조화 방향 검토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 개선 방향을 동시에 모색하였다. 먼저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상위 개념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비영리회계기준을 정비하여 비영리법인을 총괄하는 회계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제도를 보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회계기준을 적시에 개정하고 타 기준과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회계 실질이 같기 때문에 사립학교 회계기준 제정 시 국공립학교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권선국 교수, 경북대학교)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장희 교수, 충북대학교)이 있었다.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 1부(12.6),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세션 3부] 라운드 테이블

세션 3부에서는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옥동석 교수(인천대)의 발표에 이어 김현아 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전중열 교수(서울과기대),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통계센터), 김이배 교수(덕성여대)의 순서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의 주요 발표 내용 및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동석) 재정개혁과 정부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분야를 구분하여 재정총량, 분야별 재정배분, 재정사업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재정총량지표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가 재정 진단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방심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경고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분야별 재정배분 측면에서는 복지제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하더라도 복지지출 비중이 2060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용 감소 및 생산성 증대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표 달성 측정 시 원가 계산이 선행되고 효율성 지표(계량적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 포퓰리즘의 극복을 위해서는 ① 엄격한 재정준칙의 설정, ② 독립재정당국의 설치, ③ 영향과 설득을 위한 여론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 발간 등 적극적으로 재정 이슈를 제기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4~6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원의 순환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각종 선거공약과 재정사업에 대한 장기적 재정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국회예산정책처에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김현아)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제도 at a Glance 2019’에 대한 학자적 관점이 투영된 포괄적인 설명이며, 회계적 시스템과 재정운용을 연계한 설명 및 회계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재정운용과 정치적 결정에 따른 재정지출 방향과의 연계 등을 보완하여 심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회계와 재정운용의 상호 연계 등 한 단계 발전된 상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개편은 국제적인 수준이므로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전중열) 2011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재정 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원가계산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지표와 연계해 성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복식부기·발생주의가 현금주의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복식부기·발생주의 관점으로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도입된 이래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발생주의·복식부기까지 고려하여 올바른 성과평가로 연동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IMF의 ‘독립재정당국의 설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운용 정책결정 시 국가의 재정당국 실무책임자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영철) 첫째, 현 정부는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재정 지출로 연결되고 있는지,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 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재정지출을 홀딩하여 GDP로 연결되는 효과를 감축시키는 등 공공이 민간 효율성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점들이 재정진단, 효율성 판단에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세 구조 설계가 지방의 세수 증대를 유인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세입분권이 추진되면 재정 책임 및 효율성 증대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세출 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며, 행사축제 원가와 같이 단위당 행정서비스 원가를 공표한다면 지방재정 효율성 강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이배) 향후 재정학 측면에서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같이 저장(Stock)과 유량(Flow)이 융합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장(Stock)과 유량(Flow)은 융합하여 적용해야 하나 한 가지 측면에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채만 강조하기보다는 자산과 부채를 결합한 종합적인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 건전성·재정총량 측면에서 발생주의상 부채만 강조되고 있으나, 발생주의보다는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재정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정부회계야말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검증 기능을 향상시킨 복식부기를 더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원가 산출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원가 계산을 위한 제도 구축 등 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및 개발이 요구된다.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 3부(12.6),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2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가. 개요

- 일시: 2019. 12. 14(토) 15:10~16:20
- 장소: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207호
- 좌장: 조광희 교수(동국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1) (주제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개선방안
(안중기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주요 발표내용

- 국가회계기준 재정비, 지방공무원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주체와 관련된 문제 해소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 공적연금 회계처리에 IPSAS 42(사회보장급여) 도입 가능

-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IPSAS 42(사회보장급여)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한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 및 표현의 충실성 제고 가능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IPSAS 42(사회보장급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간 비교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 토론내용

- 사회보장급여 기준서(IPSAS 42) 제정에 관한 핵심 내용 소개 및 국내 공무원연금 적용과 관련한 쟁점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 선행연구는 주로 회계인의 시각에서의 쟁점(인식, 측정 등)을 연구한 반면, 본 논문은 행정학적인 시각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수행함
- IPSAS와 IFRS의 네이버 데이터 검색 비교 결과 IFRS의 검색이 IPSAS보다 월등히 높으며, 현재 IPSA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상황
- 본 논문과 같이 IPSAS 주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관심 고취 기여 기대

2) (주제2)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진태호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주요 발표 내용

-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는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적시적 대응을 위해 추진
- 각 프로젝트의 추진 절차는 센터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성
 - * 프로젝트 개요(PB) → 팀 보고서(TP) → 쟁점보고서(DP) → 자문보고서(CP) → 제안 초안(PD)
- 2020년 프로젝트는 ‘용자 회계처리 개정’, ‘재무보고 개선’, ‘연금 회계처리 개선’으로 선정

3) (주제3) 국가 재정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윤진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 주요 발표 내용

-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재정지표(‘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현행 통합재정수지에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는 반면, 국가채무에는 공공기관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있어 유량과 저량 지표의 정부 포괄 범위가 상이
 -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산출 시 정부 포괄 범위를 일치시켜 유량과 저량 통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통합재정수지 산출 시 이용하는 총수입·총지출에 용자지출이 포함되나 이는 만기에 다시 회수될 자금으로 재정운영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 용자지출 및 회수를 제외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할 필요



<한국회계학회(12.14),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207호 >

3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2월 19일(목) 감사원에서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에 참가하여 「국가부채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국가부채(D1, D2, D3)의 현황을 검토하고,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으로 자산·부채 종합관리,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토론을 맡은 김주희 연구관(감사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성장 가능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재정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동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부채의 산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국가부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12.19), 감사원 제3별관 영상회의실〉

08

공지사항

1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9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9년 12월 31일 발행

